연구보고 2013-07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지원 비교 분석 연구

김은설 최윤경 조아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2013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만 3~5세 유아기 아동 전체에 대해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게 되었고 만 0~2세 영아에게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으며, 가정 양육인 경우 소득을 감안한 양육수당이 지급되어 사실상 우리나라 만 0~5세 취학전 영유아는 모두 무상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단히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용 지원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 분야 국가 재정 또한 막대하게 증대되었고 심지어 재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까지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와 기관·시설에 지원하는 재정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 예산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업무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 제도적 현실은 두 분야가 동일한 공통과정을 운영함에도 교사나 활동에 대한 지원 비용에서 차이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질적인 수준의 동등성이 보장된다는 점에 확신을 갖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각 소관 부처가 어떤 부분에 대해 얼마만큼의 국가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둘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유·보간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의 결과가 두 부처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가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양적인 지원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 1

Ⅰ. 서론 ·····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2. 연구 내용 ····· 11
3. 연구 방법 ····· 11
4. 연구 한계 및 범위 ····· 12

Ⅱ.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정책 ····· 14
1.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의 근거 ····· 14
2.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지원 내역 ····· 18

Ⅲ.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현황 ····· 25
1. 유치원 시·도별 재정 지원 ····· 25
2. 어린이집 시·도별 재정 지원 ····· 47
3. 소결 ····· 75

Ⅳ.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간 비교 및 제언 ····· 78
1. 재정 지원의 특징 비교 ····· 78
2. 유치원·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교 ····· 82
3. 지원의 형평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 85

참고문헌 ····· 89

부록 ····· 91
부록 1. 시·도별 유치원 교사 연수 예산 ····· 93
부록 2. 시·도별 어린이집 교사 보수교육 지원 현황 ····· 93
부록 3. 교육공무원 호봉별 기본급 표 ····· 94
부록 4. 시·도별 유치원 재정 지원 현황 조사표 ····· 95
부록 5. 시·도별 어린이집 재정 지원 현황 조사표 ····· 100

표 차례

〈표 Ⅰ-3- 1〉 설문 조사 내용 ····· 12
〈표 Ⅱ-1- 1〉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관련 조항 ··· 16
〈표 Ⅱ-2- 1〉 유아교육 정책사업별 예산(2013) ····· 19
〈표 Ⅱ-2- 2〉 2011~2013 유아교육 예산 추이 ····· 21
〈표 Ⅱ-2- 3〉 2013 보육사업별 예산(국고기준) ····· 23
〈표 Ⅱ-2- 4〉 보육 예산(국고+지방정부 예산: 2007~2012년) ····· 24
〈표 Ⅲ-1- 1〉 누리과정 유아학비 ····· 27
〈표 Ⅲ-1- 2〉 방과후 과정 지원 ····· 28
〈표 Ⅲ-1- 3〉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29
〈표 Ⅲ-1- 4〉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 29
〈표 Ⅲ-1- 5〉 국·공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예산(2013) ····· 30
〈표 Ⅲ-1- 6〉 담임수당과 처우개선비, 교직수당 현황 ····· 31
〈표 Ⅲ-1- 7〉 단기대체교사 지원 ····· 32
〈표 Ⅲ-1- 8〉 학급보조원 ····· 32
〈표 Ⅲ-1- 9〉 3세대 하모니 및 세대간 지혜나눔 ····· 33
〈표 Ⅲ-1-10〉 희망유아교육사 등 기타 지원 ····· 34
〈표 Ⅲ-1-11〉 교재교구비 ····· 34
〈표 Ⅲ-1-12〉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 35
〈표 Ⅲ-1-13〉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36
〈표 Ⅲ-1-14〉 연구시범학교운영 및 정보화 교육 지원 ····· 37
〈표 Ⅲ-1-15〉 장학, 연수 및 유치원 평가 지원 ····· 37
〈표 Ⅲ-1-16〉 독서교육 활동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38
〈표 Ⅲ-1-17〉 학교운영비 지원(공립유치원 대상) ····· 38
〈표 Ⅲ-1-18〉 환경개선비 ····· 39
〈표 Ⅲ-1-19〉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 40
〈표 Ⅲ-1-20〉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 41
〈표 Ⅲ-1-21〉 우수유치원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 42
〈표 Ⅲ-1-22〉 신·증설유치원 및 기타 시설비 ····· 42

〈표 Ⅲ-1-23〉 방과후 과정 운영비 ····· 43
〈표 Ⅲ-1-24〉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 44
〈표 Ⅲ-1-25〉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 및 방학 중 운영 지원 ····· 45
〈표 Ⅲ-1-26〉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45
〈표 Ⅲ-1-27〉 기타 지원 사업 ····· 47
〈표 Ⅲ-2- 1〉 2013년 만 0~5세 보육료 지원 현황 ····· 49
〈표 Ⅲ-2- 2〉 기타 보육료 지원 현황 ····· 50
〈표 Ⅲ-2-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교사 인건비 지원 ····· 52
〈표 Ⅲ-2- 4〉 영아전담어린이집 교사 지원 현황 ····· 53
〈표 Ⅲ-2- 5〉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교사 지원 현황 ····· 54
〈표 Ⅲ-2- 6〉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현황 ····· 55
〈표 Ⅲ-2- 7〉 대체교사 지원 현황 ····· 56
〈표 Ⅲ-2- 8〉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 현황 ····· 57
〈표 Ⅲ-2- 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 ····· 58
〈표 Ⅲ-2-1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현황 ····· 59
〈표 Ⅲ-2-11〉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현황 ····· 60
〈표 Ⅲ-2-12〉 보육도우미 지원 현황 ····· 60
〈표 Ⅲ-2-13〉 기타 인건비보조금 지원 현황 ····· 61
〈표 Ⅲ-2-14〉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 ····· 63
〈표 Ⅲ-2-15〉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 ····· 64
〈표 Ⅲ-2-16〉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 ····· 65
〈표 Ⅲ-2-17〉 평가인증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66
〈표 Ⅲ-2-18〉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 ····· 67
〈표 Ⅲ-2-19〉 교재교구비 지원 현황 ····· 68
〈표 Ⅲ-2-20〉 차량운영비 및 유지비 지원 현황 ····· 69
〈표 Ⅲ-2-21〉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현황 ····· 70
〈표 Ⅲ-2-22〉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지원 현황 ····· 71
〈표 Ⅲ-2-23〉 냉·난방비 지원 현황 ····· 71
〈표 Ⅲ-2-24〉 안전관련 비용 지원 현황 ····· 72
〈표 Ⅲ-2-25〉 아동 간식비 지원 현황 ····· 73
〈표 Ⅲ-2-26〉 저소득층 아동 지원비 현황 ····· 73

〈표 Ⅲ-2-27〉 기타 지원 현황 ····· 74
〈표 Ⅳ-1- 1〉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의 유치원/어린이집 간 비교 ····· 81
〈표 Ⅳ-2- 1〉 2013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 지원 비교 ····· 84

그림 차례

〔그림 Ⅱ-2-1〕 2002~2012 보육사업 예산(국고기준) ····· 22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유아교육 예산과 보육 예산은 업무 관할 정부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음. 보육은 국고와 지자체 예산이 각각 비슷한 규모로 투입되고 유아교육은 대부분 지방교육교부금의 형태로 각 교육청으로 전달되어 지원됨으로써 상호 상이한 방식과 내용으로 인해 재정 규모에 대한 총괄적 파악이 쉽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동당 지원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아학비나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유형과 규모, 재원이란 측면에서 조사하여 둘 간 차이를 밝혀 봄으로써 이 분야 국가 재정의 활용 실태와 합리성 및 형평성을 논의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의 정책적 근거와 예산 항목에 대한 검토

□ 중앙 및 시·도별 유치원, 어린이집 간 재정 지원 현황 파악 및 비교 분석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의 형평성 및 개선 방안 논의

3. 연구 방법

□ 문헌 자료 수집

○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관련 법, 규칙, 조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2013년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관련 자료 수집, 비교

□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도 교육청 재정 담당자 대상 조사 실시

○ 17개 각 시·도청 및 교육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내역 및 비용 규모 조사 실시를 목적으로 함. 이메일 활용.

○ 학비 또는 보육료, 인건비, 시설 지원, 활동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내

용과 방법, 비용 등을 조사함.

4.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근거

□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함. 양 법에 근거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의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유아교육법

□ (유치원 지원의 근거) 취학전 3년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유치원 운영과 부모 대상 지원을 명문화 함.

□ (유치원 지원의 재원) 유아교육 정책과 사업 및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이루어짐. 그러나 누리과정과 같이 (국가공공재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 지출의 주체는 지방정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선도하는 국가정책의 추진으로 진행됨.

나.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지원의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는 보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 지원의 재원) 보육예산은 일반회계의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약 50%의 비중으로 이루어짐. 지방비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부담금으로 이루어짐.

5.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현황

가. 유치원 시·도별 재정 지원

□ 유치원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지원 예산은 크게 학비지원,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육활동 지원, 그리고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 등 4개 영역에서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1) 학비 지원

□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재원 유아 1인당 공립유치원에는 월 60천원, 사립유치원에는 월 220천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금액임.

□ 교육청은 누리과정 학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비를 해당 유아당 공립 월 5만원, 사립 7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급·간식비가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에 의하면 시·도 교육청에 따라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일부 있음.

2) 교직원 인건비 지원

□ 2013년 현재 약 10,000명의 유치원 교직원에 대해 661,734,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음.

□ 담임수당은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해 1인당 월 110천원이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책이고, 처우개선비와 교직수당은 정규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원되는 수당임. 그러나 시·도에 따라 금액에서 차이를 보임.

□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사가 교육 등으로 일시 부재 시 단기대체교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음.

3) 교육활동 지원

□ 유치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교육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방과후 과정이나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지원, 교육연구 및 연수,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자원봉사자인 '3세대하모니' 인력 운영을 위해 16개 시·도에서는 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연간 2,250천원~4,800천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간 지혜나눔 활동 지원에는 8개 시·도가 참여함.

□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사업은 2010년 교육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지역사회 내 유치원간 연계를 통한 교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임. 조사결과는 전국에서 7개 시·도의 사

업예산을 보여주고 있음.

□ 학교운영비 지원은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유치원 운영비에 대한 지원임. 전국 총 예산이 140,776,113천원임.

□ 환경개선비는 대부분 공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으나 경남과 제주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음. 해당 유치원 1개원당 지원되는 액수는 최하 2,500천원에서 최고 50,000원까지이며 전국 총예산은 4,233,832천원임.

□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 지원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았음. 즉, 방과후 과정 운영비, 강사 인건비, 시설환경개선비 등이 포함되고 있음.

□ 방과후 과정과는 별도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야간 1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시·도에 따라 조간과 야간의 돌봄서비스 전담 유치원을 선정하고 재정지원을 함.

나. 어린이집 시·도별 재정 지원

□ 어린이집에 대한 시·도청의 지원 예산을 크게 보육료, 인건비, 기능보강 및 시설, 기타 지원 등 4개 영역에서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1)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은 만 3~5세 보육료(누리과정), 만 0~2세 보육료, 장애아·방과후·시간연장 보육료, 기타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부모바우처로 지원되는 유아 1인당 220천원으로 전국이 동일함. 만 3~4세 보육료는 국비와 지방비(소득 하위 70%에 해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소득 상위 30%)으로 부담하는 한편, 만 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취학 장애아는 1인당 197천원, 미취학 장애아는 1인당 394천원이 지원됨.

2)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유형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지원)의

기관이 해당되며 교사인건비는 원장,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 방과후반 교사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음.

□ 영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는 원장 및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며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어린이집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함(보건복지부, 2013a). 영아전담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총 예산은 지역의 규모 및 대상 수에 따라 약 48억원~110억원까지 책정되어 있음.

□ 대체교사 지원은 정부 주도 사업 중의 하나로, 지원 단가는 월 1,569천원~1,590천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비슷함.

□ 각 시·도에서는 만 3~5세에 대한 전체 예산 중 보육료를 제외한 비용에서 각 시·군·구별로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를 월별로 지급함.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정부에서 기본급 이외의 비용을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따라 지원 단가는 상이함. 1인당 지원액은 2천원~195천원으로 지역에 따라 지원 단가 및 예산에 차이가 있음.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12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함.

□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따라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함.

3)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비에는 설치비,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의 지원이 포함됨. '201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국비사업인 경우 1개소당 개보수비 30,000천원, 장비비 2,000천원을 국비와 지방비의 형태로 지원하게 됨.

□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3년 6월까지 정원에 따라 개소당 960천원~8,700천원으로 차등 지원되었으나 2013년 7월부터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현재 1,160천원~8,750천원으로 시설별 차등 지원받고 있음.

□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규모와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1개월을 기준으로 최소 200천원부터 최대 280천원까지 운영비를 지원 받음.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중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 및 평가인증 유지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음.

□ 추가 지원에는 교재교구비, 누리과정 운영비, 차량운영비 및 유지비,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냉·난방비, 안전관련 비용의 6개 항목이 포함됨. 저소득층 아동 지원 항목은 입소료, 현장학습비, 아동간식비 지원 등이 있음.

6.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간 비교

□ 보육은 예산에서 어린이집이 '기능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유치원은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아동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것을 뚜렷이 강조하고 있음.

○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비용 중 보육활동의 질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항목은 유치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임.

□ 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간 인건비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00% 국고 지원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 30~80%가 중앙 및 지방정부 재원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인건비가 전액 국가 지원되는 경우 기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아동별로 지원되는 교육비나 보육료 등은 온전히 운영비, 교육·보육 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함.

□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수당은 유치원보다 낮으면서 국공립과 민간 간 수당 차이가 없다는 점이 특징적임.

□ 급·간식비 지원에 있어 차이가 있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종일 12시간 보육활동에 대한 모든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간식 비용도 포함되며, 이는 유치원과 차이가 있음.

□ 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한 지원에서 차이를 볼 수 있음. 유치원의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설립유형과 무관하게 거의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보조인력 지원은 전국 3~4개 시·도에 한해 비용 차이를 두고 주로 정부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비용 지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서는 유사한 지원 영역을 찾기 힘든 부분으로, 다양한 방과후 지원으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함. 종일 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방과후 과정 개념이 없으며 기본 일과 종료 시점인 19시 이후의 시간연장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7. 정책적 제언

□ 어린이집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즉, 보육료 지원의 방식으로 시설 운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주: 실제로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될 것임) 지원의 구체적 항목을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또 하나 상대적 비교하위에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누리과정)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100%로 확대함으로써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고 시설로 하여금 인건비 확보에 대한 노력보다는 보육의 질과 내용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수당의 지원 수준이 유치원과 동일하게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 최소한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의 누리과정 담당 유아교사에 대해서는 그러함.

□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수당의 지원 원천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는 아동 1인당 7만원의 보조금에 있다는 것은 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차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음. 즉, 누리과정 교사 수당을 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국고지원으로 전환하고 7만원 지원은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7만원 지원과 동일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점차 구조를 바꾸어갈 필요가 있음.

□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산정에서 '급·간식비' 포함 여부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유치원 교육비와 보육료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음에도 교육비는 급·간식비를 제외한 비용이고 보육료는 급·간식비를 포함한 비용임. 이에 대한 재고가 요구됨.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해보건대,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활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의 정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방과후 과정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과도하게 다양하고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비롯하여 국가 재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과 교사, 시설운영에 대해 투입되고 있는 규모는 2013년 예산에 의하면 약 12조원에 이름. 국가 재정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재정투입의 효과와 적절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또한 뒤따라야 함을 의미함.

○ 교육부의 유아교육예산은 2008년 1,012,091백만원이었으나 2009년 1,235,853백만원, 2010년 1,500,018백만원, 2011년 1,923,903백만원, 2012년 3,027,984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3,753,046백만원(누리과정 보육아동 지원 포함)으로 다시 증가되었음(김은설 외, 2012; 교육부, 2013).

○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을 보면, 2009년 3,588,600백만원, 2010년 4,289,000백만원, 2011년 5,018,600백만원, 2012년 6,132,183백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액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2013년에는 8,341,814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음(서문희 외, 2013 발간 예정).

○ 최근 들어 e-보육행정시스템, 평가인증제도의 개선, 유아교육정보공시제도 등을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등(양미선 외, 2012; 최은영 외, 2012)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점은 정책의 흐름으로 볼 때 매우 적절한 과정이라고 봄.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높아지고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로 유·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 간 지원 현황을 들여다 본 사례는 많지 않음. 국가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 자치제와 중앙 정책 추

진이 혼합되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두 분야 각각의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실현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현실적인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의 비교는 급변하고 있는 이 분야 재정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한다면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이기도 함. 이러한 작업의 결과를 통해 국가 재정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검토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만 3-5세를 위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아에 대한 교육비·보육료의 지원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된 현재의 정책적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다른 지원 분야에서 동일한 형태의 통합이 있을 경우 어디에서부터 지원이 조절되어야 할지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근거 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의 실현이 됨.

□ 유아교육 예산과 보육 예산은 업무 관할 정부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보육은 국고와 지자체 예산이 각각 비슷한 규모로 투입되고 유아교육은 대부분 지방교육교부금의 형태로 각 교육청으로 전달되어 지원됨으로써 상호 상이한 방식과 내용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 지자체나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명목을 구성하고 자율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재정의 지원 현황을 총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임.

○ 유아학비나 보육료 지원은 국가 전체의 법과 기준에 따라 아동별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흐름이나 출처, 규모에 대한 통계가 분명하게 잡힐 수 있으나, 기관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나 교육처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규모와 재원이 구체적 통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또한 유·보 간 비교한 자료를 찾는 것은 더욱 힘든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동당 지원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아학비나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유형과 규모, 재원이란 측면에서 조사하여 둘 간 차이를 밝혀 봄으로써 이 분야 국가 재정의 활용 실태와 합리성 및 형평성을 논의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의 정책적 근거와 예산 항목에 대한 검토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인 근거 자료의 분석

○ 유아교육 및 보육 국가 예산과 항목 자료 검토를 통한 예산 구조의 파악

□ 중앙 및 시·도별 유치원, 어린이집 간 재정 지원 현황 파악 및 비교 분석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정부지원(지자체, 지방교육청 자체사업 포함) 비교

○ 인건비 및 기능보강비, 운영비 지원 실태 및 재원 조달 방식 비교

○ 교사수당, 처우개선비 등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현황 비교

○ 기타(급식비, 차량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 사업 등 비교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의 형평성 및 개선 방안 논의

3. 연구 방법

□ 문헌 자료 수집

○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관련 법, 규칙, 조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2013년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관련 자료 수집, 비교

□ 지원 내역 관련 조사 실시

○ 조사 목적: 17개 각 시·도청 및 교육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내역 및 비용 규모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17개 시·도청 및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또는 보육 재정 담당 공무원 총 34명

○ 조사 기간: 2013. 8. 2 ~ 8. 16.

○ 조사 방법: 시·도청 및 시·도 교육청에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조 공문 및 조사표를 전달하고 일정 기간(2주일 가량) 경과 이후 이메일을 통해 응답지 회수함. 조사자료의 현황 기준은 2013년

7월 31일임.

○ 조사 내용: 다음의 <표 Ⅰ-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비 또는 보육료, 인건비, 시설 지원, 활동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방법, 비용 등을 조사함.

〈표 Ⅰ-3-1〉 설문 조사 내용

영역			내용
유치원	어린이집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기본 사항	⇨	소속기관, 직급, 지위, 경력
학비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교육활동 지원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기능보강 및 시설 지원 기타 (활동) 지원	⇨	지원명목, 대상기관, 대상 수, 지원방법, 단위 비용, 총예산

□ 자문회의 개최

○ 자료 수집 협조 방식 및 조사표 검토, 연구 결론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4. 연구 한계 및 범위

□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재정 지원과 관련한 현황 자료는 대부분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 담당자(장학사, 주무관 등)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것임. 따라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관련 항목의 재정 자료를 연구진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는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음.

○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결과를 정리하면서 나타나는 누락 의심 항목이나 수치 이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응답자에게 문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작성자에게 내용에 대한 재검토 과정 또한 실시하였음.

□ 유사한 내용을 가진 지원이지만 지역마다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연구자의 안목에서 재분류, 정리한 경우가 있었음을 밝혀둠.

□ 영아보육료 지원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도 담당자 중 일부는 영아보육을 위한 기본보육료를 포함하여 수치를 보고하였으나 나머지 시·도에서는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영아 1인당 부모바우처 형식의 보육료 지원액만을 보고하여 지역마다 차이를 보임. 본 보고서에서는 보고된 결과를 그대로 실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현황 표 아래 주석을 달아 기본보육료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였음.

□ 조사의 시점이 2013년 8월 초였으므로 현황 보고의 기준을 7월 31일로 함. 따라서 7월까지의 추경 예산은 시·도의 연간 총 예산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의 집행액 변화는 반영되지 못했음. 그러나 조사 시 안내를 분명하게 하였음에도 응답자에 따라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염려도 완전히 배재하기는 어려움.

□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지원'의 범위는 엄정히 교육·보육 기관·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직접 투입되는 재정지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즉, 기관 운영이나 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며 부모바우처식 지원도 결과적으로는 기관에 지급되는 지원이므로 함께 포함함. 그러나 보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은 포함하지 않았음.

Ⅱ.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정책

□ 2013년 0~5세 무상 보육·교육의 보편적 육아지원체계의 마련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과 내용의 형평성에 대한 국가수준의 관리가 요구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통의 영유아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유사한 특성을 내포하나, 법체계와 제도적 기반은 서로 다른 토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전달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국고에서 이루어지는 등 상이한 재원과 지원 내용 및 수준을 보임. 유아교육과 보육의 비교 논의 및 누리과정 운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지원체계와 내용, 구체적 수준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함.

1.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의 근거

□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함. 양 법에 나타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의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유아교육법

□ (유치원 지원의 근거) 취학 전 3년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유치원 운영 및 부모 대상 지원을 명문화 함(표 II-1-1 참조).

□ (유치원 지원의 재원) 유아교육 정책과 사업 및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에 의해 이루어

---

1)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짐.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 및 지방세간의 재정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교부세(금)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에서 비롯됨. 이와 구분하여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 사업을 수행하도록 위임, 유도하는 특정용도의 지원금이 있음"(이준구, 2011:718).

짐. 그러나 누리과정과 같이 (국가공공재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 지출의 주체는 지방정부이되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정책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유치원에서 받는 지원금은 국고로부터의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보조금, 지원금으로 이루어짐.

나.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지원의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는 보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표 II-1-1 참조).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야함.

○ 부가적으로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조함.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용(양육수당) 지원을 제도화 함.

□ (어린이집 지원의 재원) 보육예산은 일반회계의 국비와 지방비의 약 50%의 비중으로 이루어짐. 지방비는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부담금으로 이루어짐.

○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은 20% 기준보조율(±10%p)을,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50% 기준보조율(±10%p)을 적용받고 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5. 22.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 p. 2).

〈표 Ⅱ-1-1〉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관련 조항

구분	유치원 지원	어린이집 지원
무상교육보육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월 1월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7(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표 Ⅱ-1-1 계속)

구분	유치원 지원	어린이집 지원
기관 지원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②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지원 내역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예산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가. 유아교육 예산

□ (유아교육 예산 구성) 유아교육 사업 및 정책 관련 예산은 초·중·고등 학교 지원에 근거하여, 인건비 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모 대상)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5개 정책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2].

○ 17개 시·도 지방재정으로 구성된 유아교육 예산을 총계한 결과, 2013년 유아교육 예산 총액은 3,355,025백만원(3조 3천5백억원)으로, 2012년 약 3조 대비 10% 정도 증가함(표 Ⅱ-2-1 참조).

○ 예산 항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교원인건비가 줄어듬에 따라 인적자원운용의 인건비 지원 비중이 다소 줄어듬. 그러나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분류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 수당과 처우개선비의 인건비 지원(4.9%)을 합치면, 인건비 및 수당 지급에 전체 유아교육 예산 대비 24.6%로 1/4수준을 유지함.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보육 지원에 따라 학부모지원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지원이 약58%로 유아교육 예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함. 이 중 누리과정 지원이 56%임.

□ (유치원 지원 내역)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유치원 대상 지원은 공립유치원의 교원 인건비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교사 인건비, 그리고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 구체적으로 공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사립유치원 설립비 및 교사 인건비 지원과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밖의 필요경비임.

---

2) 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용 및 교육여건 개선지원의 4개 영역 구분에서 2013년 명칭 변경함.

○ 유치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지원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의 유아교육진흥 단위사업 중, (공립유치원교원 인건비 및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비 등 정규 교원의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사립유치원운영비,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희망유아교육사, 유치원 교재교구, 방과후과정반 시설환경 개선,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및 운영비 지원,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공립단설유치원 제외)의 8개 항목 예산으로 산출하였음.

○ 그 결과, 2013년 33억 5천만원으로 교육 전체 예산 대비 3.6%로 나타남. 이는 2012년 27억원에 비해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비중 4.4%에 비해 다소 줄어듦. 학부모 지원예산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해석됨.

〈표 II-2-1〉 유아교육 정책사업별 예산(2013)

단위: 백만원

금액/비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611,738 (19.7%)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운용지원)	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정규교직원인건비
			기타공립유치원정규직인건비
		비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기간제(시간제)교사인건비
			기타공립유치원비정규직인건비
384,715 (11.5%)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165,482 (4.9%)
			*사립유치원 운영비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유치원 정보공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 네트워크
			유치원 종합컨설팅단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유치원 수석교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유치원 교원동아리
			유치원 교원멘토링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희망유아교육사
			누리과정 교원연수

(표 Ⅱ-2-1 계속)

금액/비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384,715 (11.5%)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누리과정 자료보급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유치원 교재교구	
			*방과후과정반 시설환경 개선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및 운영비 지원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 (공립단설유치원 제외)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기타유아교육진흥사업비	
1,939,613 (57.8%)	교육복지지원 (유아교육비지원)	누리과정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1,881,404 (56.1%)
			3~4세 유아학비 지원	
			3~5세 방과후과정비 지원	
			농어업인 유아학비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맞벌이가구 유아학비 지원	
			기타유아학비 지원사업비	
		급식지원	저소득층 유아급식비 지원	
			기타유아급식지원사업비	
172,833 (5.2%)	학교재정지원관리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공립유치원운영비 지원	
			기타공립유치원운영지원 사업비	
196,127 (5.8%)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생수용시설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기타원아수용시설 설립비	
		교육환경개선 시설	공립단설유치원 환경개선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	
			기타유치원교육환경개선 시설비	

주: * 표기된 8개 예산 항목을 유치원 운영 지원으로 합산함.

□ 누리과정 시행 이전인 2011년부터 3~5세로 확대된 2013년까지의 유아교육 예산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누리과정으로 인한 학부모 지원의 확대로 예산 총액의 증가 속에서 학부모 대상 유아교육비 지원(교육복지지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상대적으로 인건비지원과 유치원 기관운영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총액 면에서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표 Ⅱ-2-2 참조).

〈표 II-2-2〉 2011~2013 유아교육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교육여건개선		총합계
2011	528,806 (28.7%)	343,242 (18.6%)	755,746 (41.0%)	215,582 (11.7%)		1,843,376 (100.0%)
2012	720,090 (23.8%)	395,261 (13.1%)	1,618,939 (53.6%)	287,008 (9.5%)		3,021,225 (100.0%)
2013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611,738 (19.7%)	384,715 (11.5%)	1,939,613 (57.8%)	172,833 (5.2%)	196,127 (5.8%)	3,355,025 (3조3천5백억원)

주: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으로 비교함.
자료: 교육부(2011~2013). 유아교육 예·결산 내부자료. 교육부.
권미경 외(2012). 2012 유아교육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52
최은영 외(2013. 12. 발간예정). 2013 유아교육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나. 보육 예산

□ (보육 예산의 구성) 보육 지원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이 2013년 4조 이상으로, 지방정부 분담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포함하면 2013년 보육 총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약 8조 3천으로 파악됨(표 Ⅱ-2-3 및 표 Ⅱ-2-4 참조).

○ 이 중에서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대체교사 등의) 인건비지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약 11%, 부모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 약 63%, 어린이집 기능보강 0.6%, 인프라 구축 0.4%, 평가인증 0.1%, 어린이집지원(공공형어린이집 포함) 3.6%, 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약 22%로, 교직원 인건비와 기본보조금 지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기관에 대한 운영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시설지원)은 약 4.2%임 (주: 영아보육에 지원되는 기본보조금을 운영지원에 포함하면 그 비중은 늘어남).

○ 부모 대상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이 보육 예산의 약 85%로 대부분을 차지함. 국고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동일한 양상을 보임.

○ 보육예산은 최근 10년간 보육인프라의 확충과 부모 대상 지원, 기관 지원의 확대로 인한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특히 교사인건비 지원과 보육인프라 구축에 비해, 부모 지원의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로,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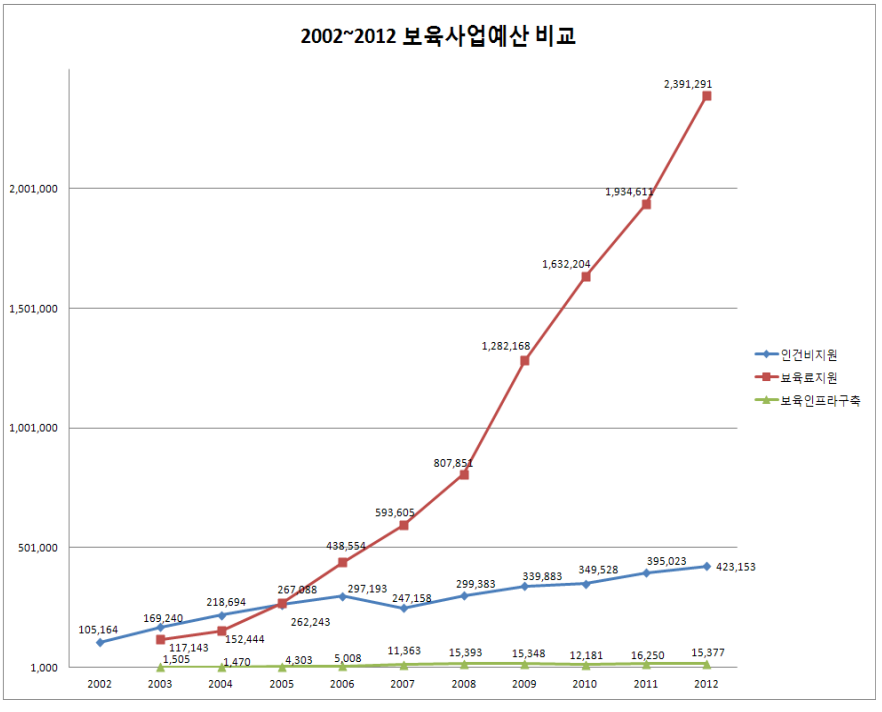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02~2012). 황옥경(2012) 재인용.

〔그림 II-2-1〕 2002~2012 보육사업 예산(국고기준)

□ (어린이집 지원 내역) 교사인건비 지원 등을 제외한 어린이집 대상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초과보육/취약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

〈표 II-2-3〉 2013 보육사업별 예산(국고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13년 사업내용	예산	비중(%)
어린이집운영 지원		444,463	10.8
-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인건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42,427명 · 영아전담: 6,409명 · 시간연장: 10,000명 · 장애아 등: 5,071명 · 대체교사: 500명	444,463	10.8
영유아보육료 지원	· 0~5세 전계층 1,115천명 · 장애아 무상보육 14천명 · 시간연장 보육료 53천명	2,598,219	62.9
어린이집 기능보강	· 신축 국공립 75개소 ·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 장애아전문 2개소 · 기자재구입 30개소 · 환경개선비(장비비) 350개소 · 장애아보육환경개선(장비비) 69개소	23,610	0.6
보육인프라 구축		24,990	0.6
- 보육사업관리	·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홍보 · 우수보육프로그램 발굴·보급	4,059	0.1
-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5개소	8,636	0.2
-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 자격관리, 보수교육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연수비용 지원	5,054	0.1
-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연구	·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202	0.0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 전자바우처운영 및 시스템기능 개선 · 아동 등하원 관리체계 구축	11,395	0.3
보육시설평가인증	· 평가인증 운영 및 사무국 지원	6,668	0.2
어린이집 시설지원		150,445	3.6
- 교재교구비	· 교재교구비 지원	8,630	0.2
- 차량운영비	· 차량운영비 지원(20만원/월)	4,940	0.1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2천명 · 교사겸직원장지원 23명	105,802	2.6
-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773개소	1,024	0.0
- 공공형 어린이집	· 시설유형·규모에 따라 운영비 지원	30,049	0.7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만 0~5세 전계층 1,193천명	880,950	21.3
계		4,131,345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p. 173

〈표 II-2-4〉 보육 예산(국고+지방정부 예산: 2007~2012년)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및 내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설운영 지원	인건비	554,824	658,368	753,082	766,876	813,638	867,084
보육료 지원	0-4세 영유아보육료	897,452	1,254,762	2,109,618	1,856,036	3,499,6426	4,525,895
	5세아 무상보육	280,901	262,783	281,906	248,963	205,361	27,277 (교부금 599,600)
	장애아무상보육	71,543	66,577	105,602	94,721	88,778	87,680
	두자녀보육료	47,059	98,594	172,116	173,235	-	-
	기본보조금	306,303	530,472	-	934,915	-	-
	맞벌이 보육료	-	-	-	19,700	88,820	92,002
	다문화가족 무상보육	-	-	-	-	23,447	19,364
	시간연장보육료	-	-	-	-	-	68,603
	농어업인보육료	-	-	-	-	-	19,850
	기타	-	-	-	-	-	-
	소계	1,603,259	2,213,188	2,669,242	3,327,570	3,915,155	4,840,670
어린이집 기능 보강		83,263	65,197	41,978	17,902	25,900	23,734
인프라 구축 등 기타		15,100	24,615	8,205	7,362	19,335	22,785
어린이집 평가인증		-	(11,987)	(4,191)	(3,401)	(4,975)	6,026
어린이집 지원		-	30,325	32,502	32,473	31,320	127,015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	-	-	16,347	31,022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	68,802	136,764	186,905	213,846
계		2,286,656	2,991,693	3,573,811	4,288,947	5,018,600	6,132,183

주: 국고지원 사업 중앙과 자방정부예산 합계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함.
2009년 기본보조금은 운영비에 포함됨. 시·도 미통지액 포함함.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내부자료.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67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28

Ⅲ.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현황

□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의 현황을 각 시·도별로 제시하고자 함. 각 시·도별 자료는 본 연구에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3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임.

1. 유치원 시·도별 재정 지원

□ 유치원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지원 예산은 크게 학비지원,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육활동 지원, 그리고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 등 4개 영역에서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앞장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2013년부터 적용된 예산 지원 5개 영역 중 학생수용시설, 진흥원설립 등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여건시설개선 지원은 유치원에 대한 직접 지원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고 일부는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에 포함하여 분류한 결과임. 결과적으로 2012년 예산 지원 영역과 일치하고 있음.

□ 유치원은 설립유형에 따라 공립(국립 포함)과 사립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립은 국가의 공교육 체계에 속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비용, 교원에 대한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이 모두 공적 비용에서 지원되고 있음.

○ 공립유치원의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급여 기준에 따라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유치원 운영비 또한 교육재정에서 지원됨(부록 3 참조).

○ 2008년 이후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각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식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의 규모는 각 시·도 교육청의 연간 예산 또는 결산을 통해 알 수 있음.

○ 그러나 공립유치원은 의무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예산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경비로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음.

□ 사립유치원의 경우 건물 설립과 운영, 교원 인건비 등은 모두 사립유치원 자체부담이 원칙이나, 유치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일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특별히 학비 또는 교육활동비 등에서 유아나 유치원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음.

가. 학비 지원

□ 유치원 원아에 대한 정부의 학비지원은 국가사업으로서 누리과정 학비, 방과 후 과정 학비를 꼽을 수 있고 그 외 교육청별 자체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누리과정 유아학비

□ 2013년 현재 누리과정 교육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3~5세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유아는 누리과정 학비 지원 대상이 됨. 그러므로 전국 차원에서 볼 때 유치원 재원 아동 수인 613,749명(2012년 통계.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index.jsp 2013. 9. 13. 인출) 모두 지원 대상이된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의 <표 Ⅲ-1-1>을 보면, 공립(140,177명)과 사립(508,895명)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 수는 총 649,072명으로 교육통계서비스의 2012년 통계치보다 35,32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 표의 수치는 2013년 7월 31일 기준이므로 추정된 초기 예산에서 변화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하게 함.

□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재원 유아 1인당 공립유치원에는 월 60천원, 사립유치원에는 월 220천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금액임.

○ 조사결과에서 보면, 2013년 7월 현재 추경 예산을 포함했을 때 전국 17개 시·도의 누리과정 유아학비 총 예산은 1,177,833,719천원임. 지역별 비율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경기도가 24.7%, 서울 18.4%, 부산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립 및 사립유치원 간 유아학비 지원액을 비교하면, 공립에 재원 중인 유아에 대한 지원이 사립 유아에 비해 약 8%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III-1-1〉 누리과정 유아학비

단위: 천원, 명

시·도	공 립			사 립			계
	1인 월 지원액	유아 수	총 예산	1인 월 지원액	유아 수	총 예산	
서울	60	12,204	10,373,900	220	80,900	206,295,700	216,669,600
부산	60	4,091	2,454,600	220	40,750	89,650,000	92,104,600
대구	60	4,148	2,488,800	220	30,382	66,840,400	69,329,200
인천	60	8,011	4,906,600	220	32,865	72,303,000	77,209,600
광주	60	4,110	2,466,000	220	19,279	42,413,800	44,879,800
대전	60	3,878	2,283,000	220	21,629	46,571,800	48,854,800
울산	60	2,979	1,787,400	220	15,982	35,160,400	36,947,800
세종	60	1,300	936,000	220	350	924,000	1,860,000
경기	60	38,955	24,279,891	220	144,180	266,751,223	291,031,114
강원	60	6,171	370,260	220	9,780	2,151,600	2,521,860
충북	60	8,240	4,954,026	220	9,116	20,109,617	25,063,643
충남	60	8,979	5,464,800	220	17,428	32,351,000	37,815,800
전북	60	7,037	4,171,200	220	16,253	35,915,000	40,086,200
전남	60	9,039	4,992,600	220	9,846	21,258,600	26,251,200
경북	60	7,303	6,256,200	220	19,249	61,485,600	67,741,800
경남	60	11,445	6,517,250	220	37,848	83,264,972	89,782,222
제주	60	2,287	1,611,360	220	3,058	8,073,120	9,684,480
계		140,177	86,313,887		508,895	1,091,519,832	1,177,833,719

2) 방과후 과정 지원

□ 교육청은 누리과정 학비와 함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비를 각 해당 유아 당 공립 월 5만원, 사립 7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이 비용지원은 일일 8시간 이상 유치원에 있으면서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 한하여 지원됨. 즉 주로 오후 5시 이후 유치원에 있을 것을 선택한 유아가 방과후 과정의 대상이 됨.

○ 지원되는 방과후 과정 교육비는 특성화 교육, 방과후 활동, 방과후 오후 현장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비와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전체 유치원 이용 유아 649,072명 중 62.1%인 407,513명이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예산 총액은 262,567,306천원임.

〈표 III-1-2〉 방과후 과정 지원

단위: 천원, 명

시·도	공 립			사 립			계
	1인 월 지원액	대상 유아 수	총 예산	1인 월 지원액	대상 유아 수	총 예산	
서울	50	6,103	3,051,500	70	40,451	28,315,700	31,367,200
부산	50	3,528	1,764,000	70	19,450	13,615,000	15,379,000
대구	50	3,775	1,887,500	70	20,362	14,253,400	15,140,900
인천	50	3,857	1,928,499	70	13,554	9,487,800	11,416,299
광주	50	3,714	1,857,000	70	13,392	9,374,400	11,231,400
대전	50	2,549	1,243,500	70	13,667	9,034,200	10,277,700
울산	50	1,974	987,000	70	7,103	4,972,100	5,959,100
세종	50	1,300	780,000	70	350	294,000	1,074,000
경기	50	31,267	15,181,615	70	66,496	45,561,767	60,743,382
강원	50	5,917	295,850	70	8,068	564,760	860,610
충북	50	7,995	4,010,507	70	6,929	4,864,677	887,5184
충남	50	8,979	4,554,000	70	13,732	10,293,500	16,033,000
전북	50	6,904	3,407,000	70	14,542	11,199,300	14,606,300
전남	50	9,039	4,026,000	70	9,846	6,403,600	10,429,600
경북	50	6,522	5,104,000	70	15,982	17,983,700	23,087,700
경남	50	10,233	5,002,445	70	25,078	17,554,166	22,556,611
제주	50	2,287	1,372,200	70	2,568	2,157,120	3,529,320
계		115,943	56,452,616		291,570	205,929,190	262,567,306

3)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누리과정 학비 지원에 추가로 장애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액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차이를 두고 있으나 경남교육청은 동일하게 154천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III-1-3〉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단위: 천원, 명

시·도	공 립			사 립			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대전	110	124	130,680	361	58	433,200	563,880
울산	110	36	47,520	380	47	214,320	261,840
충남	110	40	43,200	361	80	346,560	389,760
경남	154	41	75,891	154	121	223,893	299,784
계		200	221,400		185	994,080	1,515,264

주: 장애유아무상교육비는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보고는 위 4개 시·도만 있었음.

4) 급·간식비 지원

□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급·간식비가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에 따라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일부 있음.

〈표 III-1-4〉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단위: 천원, 명

	시·도	공 립		사 립		계
		대상 수	총 예산	대상수	총 예산	
저소득층 유아	대전[1]	30	4,320	355	51,120	55,440
	경남[2]	10	3,893	-	-	3,893
학교 무상급식	충남	8,979	3,053,493	-	-	3,053,493
	전남	250	123,625	-	-	123,625
	경남[3]	6,123	2,571,157	-	-	2,571,157
	제주	1,962	919,908	3,059	1,551,815	2,471,723
친환경 농산물[4]	광주	3,941	151,453	-	-	151,453
	전남	3,187	430,245	7,213	973,755	1,404,000
	제주	1,962	113,275	3,059	170,693	283,968
농촌지역 식품비	충북	4,151	460,761	2,150	238,650	699,411
벽지학교 급식비	충북	145	56,334	-	-	56,334
특수학생 급식비	충북	53	15,688	-	-	15,688
우수농산물	충남[5]	-	-		613,381	613,381
소규모학교급식비	경북	2,731	1,141,558	-	-	1,141,558
부대 경비	전남	-	-	-	-	53,776
계			9,045,710		3,599,414	12,698,900

주: 1) 저소득층자녀 간식비로, 지자체(대전시청) 보조금임. 연 1회 지원.
2) 동지역 유치원 특수학급 저소득 자녀 대상. 분기별 지원.
3)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대상. 지자체보조금 70%.
4) 지자체 보조금 포함.
5) 충남 우수농산물 지원(자치단체 보조금).

○ 학교무상급식 정책에 의해 충남은 공립 유치원 유아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고 경남은 농어촌 지역의 공립에만 지원이 됨.

○ 공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이 많으며, 대부분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루어짐.

나.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는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따라 매우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제시함.

○ 공립유치원의 경우 각 시·도별로 호봉, 직급 및 직종별로 급여 조사가 어렵고 다른 항목과는 달리 추경이 많지 않아 조사결과 또한 교육부가 제공하는 2013년 시·도별 교육예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 의견(시·도 교육청 장학사 전화 면접, 2013. 7. 28.)을 수렴하여, 실사를 실시하지 않음. 대신 교육부 자료를 활용함.

1) 공립 유치원

□ 2013년 현재 약 10,000명의 유치원 교직원에 대해 661,734,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III-1-5〉 국·공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예산(2013)

단위: 백만원

지역	교원 수	인건비 예산	지역	교원 수	인건비 예산
서울	645	38,325	경기	2,313	130,369
부산	220	16,008	강원	543	47,196
대구	257	19,415	충북	565	34,909
인천	369	15,140	충남	784	31,500
광주	263	15,004	전북	671	40,340
대전	227	19,007	전남	822	72,420
울산	160	10,627	경북	817	94,628
세종	n.a.	5,071	경남	1,155	61,562
			제주	166	10,213
계					661,734

자료: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index.jsp), 교육부 내부자료(2013). '유아교육예산'.

2) 사립유치원

가)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및 교직수당

□ 담임수당은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해 1인당 월 110천원이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책이고, 처우개선비와 교직수당은 정규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원되는 수당임. 그러나 시·도에 따라 금액에서 차이를 보임.

〈표 III-1-6〉 담임수당과 처우개선비, 교직수당 현황

단위: 천원, 명

	담임수당[1]		처우개선비(인건비보조)			교직수당			1인당 수당 총액
시도	대상수	총 예산	1인당 지원액	대상수	총 예산	1인당 지원액	대상수	총 예산	
서울	4,260	5,623,200	250	5,200	9,360,000	150	5,200	15,600,000	510
부산	1,632	2,155,560	350[2]	2,939	11,172,400	-	-	-	460
대구	1,252	1,609,520	350	1,481	6,219,500	-	-	-	460
인천	1,570	2,057,440	350	2,207	9,156,700	-	-	-	460
광주	892	1,178,100	150[3]	1,034	1,861,800	250	1,241	3,723,000	510
대전	997	1,321,320	100	1,458	2,084,600	250	1,458	4,467,000	460
울산	659	72,490	400	895	358,000	-	-	-	510
세종	15	19,800	100	15	8,000	250	18	54,000	460
경기	6,319	8,293,780	350	8,347	34,990,053	-	-	-	460
강원	415	54,780	400	664	3,187,200	-	-	-	510
충북	442	579,920	400	630	2,935,000	-	-	-	510
충남	1,035	1,320,000	150	1,051	1,860,000	250	1,152	3,300,000	510
전북	870	1,148,400	50	1,150	690,000	300	1,150	4,140,000	460
전남	632	821,260	400	734	3,406,400	-	-	-	510
경북	1,244	1,642,080	400	1,745	8,379,000	-	-	-	510
경남	1,560	2,094,840	400	2,389	11,630,849	-	-	-	510
제주	119	155,760	400	164	760,588	-	-	-	510
계	23,913	30,148,250	9,505	32,103	108,060,090	1,450	10,219	31,284,000	8,320

주: 1) 담임 수당은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동일하게 일인당 월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2) 부산은 담임에게 35만원, 비담임에게 20만원 지원함.
3) 금액이 10~15만원인 지역은 처우개선비가 아닌, 인건비보조의 명목으로 지급함.

○ 조사결과를 보면, 처우개선비는 13개 시도에서 최고 월 400천원이 교사 개인별로 지원되고, 교직수당은 서울, 광주, 대전 등 6개 시·도에서만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둘을 모두 지급하는 지역은 드물고 지원 비용도 유사함.

○ 전체적으로 볼 때 유치원 담임교사에게는 지역에 따라 최하 46만원에서 최고 51만원까지 매월 수당이 지원되고 있음(표 III-1-6 참조).

나) 단기대체교사 및 보조원인건비 지원

□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사가 교육 등으로 일시 부재 시 단기대체교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음.

○ 서울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15개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원 제도로, 대체교사 1인당 1일 5만원 지원이 대부분임. 강원과 충북은 6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III-1-7〉 단기대체교사 지원

단위: 천원, 명

시·도	1인당 지원액[1)]	대상 수	총 예산
부산	50	36	198,000
대구	50	1,252	74,500
인천	50	158	110,400
광주	4,500	15	67,500
대전	50	132	82,500
울산	1,562	35	62,480
세종	50	4	5,000
경기	50	1,400	350,000
강원	60	-	50,000
충북	60	42	93,937
충남	50	4,000	200,000
전북	50	55	109,500
경북	50	4,502	225,100
경남	47	2,700	126,279
제주	50	-	23,500
계		14,331	1,778,696

주: 1) 대체교사 1인에 대해 1일 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함. 그러나 광주와 울산은 다른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임.

□ 이 외에 경북교육청은 정규 교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의 학급보조원에 대해 1인당 월 1,710천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보조원 개인계좌로 지급됨.

〈표 III-1-8〉 학급보조원

단위: 천원, 명

시·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경북	1,710	31	531,254

다. 교육활동 지원

□ 유치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교육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방과후 과정이나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지원, 교육연구 및 연수,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1) 교육활동 지원 인력 인건비

가) 3세대 하모니 및 세대간 지혜나눔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자원봉사자인 '3세대하모니' 인력 운영을 위해 16개 시·도에서는 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연간 2,250천원~4,800천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간 지혜나눔 활동 지원에는 8개 시·도가 참여함.

〈표 III-1-9〉 3세대 하모니 및 세대간 지혜나눔1)

단위: 천원(연간)

시·도	3세대 하모니 활동 지원비		세대간 지혜나눔 활동비	
	기관당 비용	총 예산	기관당 비용	총 예산
서울	4,800	3,356,656[2]	20,000[3]	220,000
부산	4,800	1,881,750	2,400	900,000
대구	2,250	676,005	2,400	73,062
인천	4,000	500,000	-	-
광주	4,200	1,138,200	-	-
대전	3,600	756,000	-	
울산	4,800	916,800	500	100,000
세종	400(1인당/월)	206,400	1,200	79,200
경기	4,500	9,200,500	-	-
충북	4,800	1,680,725	-	-
충남	4,200	1,022,000	2,400	182,160
전북	4,500	1,629,000	-	-
전남	400(1인당/월)	2,132,000	-	5,580
경북	4,850	3,545,150	2,000	90,000
경남	400(1인당/월)	3,273,600	-	-
제주	4,000	304,000	600-700	88,200
계		62,124,692		1,650,002

주: 1) 3세대 하모니와 세대간 지혜나눔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또는 일부에 대해 지원됨.
2) 서울시 해당 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지원액을 모두 포함함.
3)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액임.

나) 기타

□ 그 외 교육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는 서울, 울산, 제주의 희망유아교육사, 강원의 보결전담강사, 전남의 수업선도교사제 등을 들 수 있음.

〈표 III-1-10〉 희망유아교육사 등 기타 지원

단위: 천원

시·도	사업명	대상기관	기관당 비용	총예산
서울	희망유아교육사	공립 단설	23,464	305,032
울산	희망유아교육사	공·사립, 미이용유아	23,804(1인당)	238,047
강원	보결전담강사 운영	공립, 사립	22,000	242,000
전남	수업선도교사제	공립, 사립	700	26,600
제주	희망유아교육사	공립, 사립	-	145,815
계				957,494

2) 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가) 교재교구비

□ 각 시·도 교육청은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기관당 지원 비용으로 충남과 세종, 부산, 울산이 높은 편임.

〈표 III-1-11〉 교재교구비

단위: 천원

시·도	대상기관	기관당 비용	총예산
서울	사립	2,550	2,115,000
부산	공립, 사립	3,000~3,500	1,350,200
인천	사립	-	158,200
대전	사립	2,120~2,746	474,300
울산	공립, 사립	3,000	573,000
세종	공립, 사립	5,000	125,000
충북	공립	2,000	997,700
충남	공립, 사립	일반교구 1,000~8,400	94,000
		누리과정교재 3,000	2,194,000
전남[1)]	공립	8,462	330,000
경북[1)]	공립, 사립 일부	8,510	400,000
경남[1)]	공립	75~2,500	285,000
계			6,902,400

주: 1) 사립유치원 도서구입비 지원

나)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사업은 2010년 교육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지역사회 내 유치원간 연계를 통한 교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임. 조사결과는 전국에서 7개 시·도의 사업예산을 보여주고 있음.

○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거점 유치원을 중심으로 기관 당 연간 83만원부터 7,70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 서울이 기관당 지원액이 가장 높음. 그러나 전체 시·도 내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의 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므로 지원액 또한 네트워크 전체의 규모와 수를 고려하여 비용비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표 III-1-12〉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단위: 천원

시·도	대상기관	기관당 비용	총예산
서울	공립 일부	77,000	847,000
울산	공립, 사립	1,500~50,000	373,260
세종	공립, 사립	75,000	75,000
강원	공립	12,900	154,800
충북	공립, 사립 일부	20,000	220,000
충남	공립, 사립	5,000~30,000	500,600
경남	공립	833	220,000
경북	공립	5,375	827,900
제주	공립, 사립	50,000	400,000
계			3,618,560

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시·도 교육청마다 강조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지원하는 비용도 다름.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은 시·도의 상황과 특성이 달라 선택하는 사업의 차이를 가져오게 됨.

○ 토요일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강원도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이나 광주, 울산, 제주와 함께 체험학습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조사된 결과를 보면 광주시와 울산, 제주, 강원도의 특색 사업이 다양한 것으로 추측됨.

〈표 III-1-13〉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단위: 천원

사업명	시·도	대상기관	기관당 비용	총 예산
현장체험학습 차량지원비 지원	부산	공립	1,200	214,800
마주보며 이야기나누기 사업운영	대구	공립, 사립 일부	500	40,360
유치원교육지원	광주	공립, 사립	-	83,874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공립, 사립	-	264,279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		공립, 사립	388	31,040
도시·농촌간 교류체험지원		공립 일부	2,000	12,000
교육용자료개발보급		공립, 사립	42,300	42,300
유치원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대전	공립, 사립	89~161	2,000
선도학급 지원		공립	4,000	16,000
현장체험학습차량비 지원	울산	공립	1,300	100,000
교육용 자료개발 보급		공립, 사립	650	123,875
유아 체험학습 운영		공립, 사립	2,000	382,783
토요프로그램 운영	강원	공립	1,662	166,200
유아체험학습운영		공립, 사립	5,000	84,000
바둑교실		공립, 사립	5,823	99,000
특기적성교육지원	경남	공립, 사립	100	156,000
유-초 연계 멘토링제운영 지원		공립, 사립	83	30,000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제주	공립, 사립	-	66,144
교단지원프로그램운영		공립, 사립	-	69,500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공립, 사립	-	28,000
계				1,563,511

라) 연구시범학교운영비와 R-러닝 구축 및 활용

□ 모든 유치원은 아니지만 선정된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연구시범학교, R-러닝 구축 및 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연구시범학교는 전남에서만 사립 유치원 지정을 포함하고 있고, 정보화교육에 대한 지원은 대전에서 가장 큰 예산 편성을 보이고 있음.

〈표 III-1-14〉 연구시범학교운영 및 정보화 교육 지원

단위: 천원

시·도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R-러닝/정보화 구축 및 활용		
	대상기관	기관당 비용	총 예산	대상기관	기관당 비용	총 예산
광주	공립	8,000	8,000			
대전	공립	8,000	16,000	공립	8,200	295,200
울산	공립	5,000/20,000	25,000			
충남	공립	5,000	5,000			
전남	공립 , 사립	3,000~5,000	56,000			
경북				공립, 사립	3,000	225,000
경남	공립	1,000	24,000			
제주	공립	6,000	6,000	공립, 사립	4,500	49,500
계			139,000			520,200

마) 장학, 연수 및 유치원 평가 지원

□ 대전과 울산, 강원 교육청에서 소수의 공·사립 유치원에 대해 자율 장학이나 컨설팅, 연수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울산의 경우 '둥지'를 구성하여 둥지별로 거점 유치원 23개에 지원함.

〈표 III-1-15〉 장학, 연수 및 유치원 평가 지원

단위: 천원

사업명		시·도	대상기관	기관당 비용	총예산
장학 연수 지원	초임교사멘토링제 운영	경북	공·사립 일부	1,000	30,000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지원	대전	공립	1,000	12,000
	자율연수협의회 지원	대전	공립	1,000	2,000
	둥지장학운영비	울산	공립, 사립	3,000	69,000
	유치원종합컨설팅	강원	공립, 사립	1,027	17,464
유치원 평가	유치원평가관리	대구	공·사립 일부	1,000	164,302
	유치원교원능력평가 운영	강원	공립, 사립	1,584	47,516
	학교평가자구노력비	경남	공립, 사립	115/174	298
	교원능력개발평가	제주	공립	3,400	23,800
	유치원평가관리	제주	공립, 사립	900~1,200(차등)	82,420
계					113,000

바) 독서교육 활동비와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독서교육 활동비는 도서구입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은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연 1회 50만원~400만원을 지원함.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전남에서 진행되고 있음.

〈표 III-1-16〉 독서교육 활동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단위: 천원

시·도	독서교육 활동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기관	원당 비용	총 예산	대상기관	원당 비용	총 예산
부산	공립, 사립	500	191,000	공립, 사립	2,400-4,800	1,678,706
대구	사립	500	117,500	-	-	-
광주	공립	500	60,000	공립, 사립	2,000	536,000
울산	공립, 사립	1,000	191,000	공립, 사립	1,000	200,000
충북	-	-	-	공립	2,400	1,334,400
전남	공립	40,000	80,000	사립	5,000	100,000
계			559,500			3,849,106

4)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가) 학교운영비 지원

□ 학교운영비 지원은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유치원 운영비에 대한 지원임. 전국 총 예산이 164,603,295천원임.

〈표 III-1-17〉 학교운영비 지원(공립유치원 대상)

단위: 개원, 천원

시·도	대상 수	기관당 비용	총 예산
서울[1)]	172①	208,699	35,896,209
	15②	131,234	1,968,520
부산	70	-	4,897,416
대구	126	원당 11,162/급당 3,500/학생당 10	4,855,111
인천	-	-	22,396,359
광주	120	-	2,173,417
대전	90	규모별차등	8,844,562
울산	77	월 단위 학급당 450~600	6,171,844
세종	22	33,604	739,304
강원	276	차등지원	7,709,567
충북	15	99,667	2,741,847
충남	366	3,389~347,154	11,164,452
전북	356	47,010	16,735,840
전남	411	-	11,647,536
경북	540	학급당 250	16,200,000

(표 Ⅲ-1-17 계속)

시·도	대상 수	기관당 비용	총 예산
경남	423	1,781	9,038,267
제주	110	15,508~69,534	1,423,044
계			164,603,295

주: 1) 서울- ①학교기본운영비(공립 전체), ②학교기타운영비(일부 공립)

○ 서울의 경우는 학교기본운영비 외에 일부 공립유치원에 대해 학교기타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함.

○ 기관당 지원되는 비용은 시·도 교육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원당 지원되는 금액만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환경개선비

□ 환경개선비는 대부분 공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으나 경남과 제주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음. 해당 유치원 1개원당 지원되는 액수는 최하 2,500천원에서 최고 53,000원까지이며 전국 총예산은 5,169,532천원임.

〈표 Ⅲ-1-18〉 환경개선비

단위: 천원, 개원

시·도	대상기관	총 대상 수	기관당 비용	총 예산
부산	공립	5	20,000	100,000
	공립, 사립[1]	-	3,000	764,000
광주	공립 일부	25	-	1,679,587
대전	공립	34	20,000	680,000
울산	공립[2]	5	20,000	100,000
세종	공립신설	2	50,000	100,000
충북	공립 일부[1]	-	3,100	21,700
충남	공립, 사립	116학급, 200개원	700~6,000	784,000
전북	공립 단설	7	53,000	371,014
경남	공립	92	2,706	248,931
	사립	95	2,793	265,300
제주	사립	22	2,500	55,000
계				5,169,532

주: 1) 부산의 일부 지원과 충북의 지원은 '교단 환경 개선비'로 지원하는 항목임.
2) 울산은 '놀이터 환경개선비'로 지원함. 기타 환경개선비는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서 직접 지원함.

○ 경남 교육청은 유치원 당 비용이 높지는 않으나 가장 많은 수의 유치원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공립과 사립 간 비용이나 지원 대상 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징을 나타냄.

다) (납입금 동결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 조사결과를 보면,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수업료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유치원 중 수업료 동결을 준수한 유치원에 한하여 지원함.

○ 지역에 따라 각 유치원의 조건을 고려하여 원아당 또는 학급당, 또는 유치원당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전남은 연간 3,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는 월 200천원~450천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금액은 비슷한 것으로 보임. 전국 총액은 20,892,232천원으로 나타남.

〈표 III-1-19〉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단위: 천원, 개원

시·도	총 대상 수	기관당 비용/월 기준	총 예산
서울	393	250	3,594,000
부산	380학급	250	1,140,000
대구	49	원아당 3~12(차등)	598,512
인천	-	250(차등)	1,300,000
광주	-	200(기본)/180(추가)	1,644,000
대전	117	250(12개월)	351,000
울산	42	300(기본)/150~450(차등)	2,242,800
강원	100	(차등)	1,167,000
충남	293학급	250	1,230,000
전남	477	3,000[1)]	1,431,000
경북	540학급	250	1,620,000
경남	1,560	226	4,233,000
제주	119	200~250(차등)	340,920
계			20,892,232

주: 1) 전남은 연간 지원액임. 타 지역과 달리 연 1회성으로 지원함.

라) 기타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 기타 공립유치원 운영 지원으로서는 통학차량비 지원, 학부모교육과 활동 지

원, 실외놀이터 또는 노후시설 보수 또는 교체비 등을 들 수 있음.

○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차량운행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로 농어촌이 많은 교육청 산하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큰 것으로 보임.

〈표 III-1-20〉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단위: 천원, 개원

	시·도	대상 수	기관당 비용	총 예산
통학차량 지원비	광주	17	-	715,958
	대전	14	37,800(대형)/31,800(중형)	455,400
	울산	44	4,800~40,200	1,230,000
	강원1)	144	30,000	4,320,000
	충남	122	20,500	3,708,280
	전남	247	14	3,480,000
	경남	19	6,228	1,419,952
	제주	13	차등지원	130,437
학부모 교육지원	대전	1	15,000	15,000
	울산	4	20,000	80,736
실외놀이터 보수	광주	-	-	6,000
	전남	-	18,885	709
	제주	6	10,000~20,000	80,000
노후시설 교재교구 교체비	대구	7	10,000	70,000
	광주	5	-	15,386
	경남	50	1,667	1,000,000
계				16,727,858

주: 1)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마) 우수유치원 지원

□ 기타 사립유치원이 포함된 일부 유치원의 운영지원을 살펴보면, 먼저 대구, 강원, 전남의 경우 우수유치원에 선정된 유치원들에 대해 연간 6,000천원~9,000천원을 지원함. 이 사업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모두 일어나고 있을 것이지만 현황 조사에서 보고된 지역만을 제시하고 있음.

□ 대구, 광주, 경북, 전남 등 4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표 III-1-21〉 우수유치원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단위: 천원, 개원

	시·도	대상기관	대상 수	기관당 비용	총 예산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지원	대구	공립, 사립	-	최우수 9,000 우수 6,000	72,200
	대전1)	사립	17	1,170	20,000
	강원	공립	-	6,429	45,000
	충남	공립, 사립	9	6,000~9,000	57,000
	전남	공립, 사립	9	9,000(6,000)	57,000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원	대구	사립	233	수수료의 최대 2%	65,090
	광주	사립	-	-	90,508
	울산	사립	10	결재금액의 0.36%	6,958
	충남	사립	14	300	4,200
	경북	사립	231	471	10,907
	경남	사립	12	42	6,000
계					434,863

주: 1) 대전은 유치원평가 우수유치원 지원임.

바) 신·증설유치원 및 기타 시설비

□ 시·도 교육청은 신·증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바, 대부분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남의 경우 사립유치원 1개원 신설에 300,000천원의 시설비를 지원한 것이 특이사항임. 또한 실외놀이시설 설치비로도 공립과 사립에 같이 지원하고 있음.

〈표 III-1-22〉 신·증설유치원 및 기타 시설비

단위: 천원, 명

사업명	시·도	대상기관	대상 수	기관당 비용	총 예산
에듀케어 증반	서울	공립	10	40,100	401,000
학급신·증설비품구입	광주	공립 일부	-	-	243,079
방과후과정반 신설비	울산	공립	4	-	20,000
신·증설 환경개선비	울산	공립	11	40,000	440,000
신·증설 학급환경개선비	강원	공립	14	30,000	420,000
신·증설운영비	충남	공립	20	20,000	400,000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경남	공립	4	1,667	80,000
실외놀이시설비	전남	공립, 사립	30	19,594	587,820
신설사립유치원 시설비 지원	전남	사립	1	300,000	300,000
유치원증개축	제주	공립	3	-	923,590
계					3,815,489

사) 방과후 과정 지원

□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 지원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즉, 방과후 과정 운영비, 강사 인건비, 시설환경개선비 등이 포함되고 있음.

(1) 방과후 과정 운영비

□ 방과후 과정 운영비를 보면,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비용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개별 유치원당 지원 비용은 에듀케어라는 사업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서울이 8,400천원으로 가장 많음.

○ 지역에 따라 공립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립과 사립 모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 교육청도 있음.

○ 대구시의 경우 2억원을 광역시청으로부터 보조받아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비의 일부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표 III-1-23〉 방과후 과정 운영비

단위: 천원, 명

시·도	대상기관	총 대상 수	기관당 비용	총 예산
서울	사립		8,400	3,200,400
부산	공립, 사립	-	300-700(차등)	2,996,400
대구*	1)공립,사립	-	280/209-455(차등)	200,000
	2)사립	-	1,350	961,200
광주	공립	-	2,000	368,000
대전	사립	168	학급당 500	2,652,000
울산	사립	114	원당 6,000(연간)	708,000
경기	공립	1,540학급	4,000	6,160,000
	사립	940	2,000	1,880,000
강원	공립, 사립	377	1,800	678,600
충북	공립	-	2,000	1,112,000
충남	공립	158	5,000~10,000(차등)	1,492,500
전남	공립	651	5,000	3,255,000
	사립	108	3,000	324,000
경남	공립	600	3,000	1,800,000
	사립	259	2,750	712,250
계				28,500,350

주: * 1) 지자체지원금(대구광역시청), 2) 교육청자체예산

(2)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는 주로 공립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며, 광주나 부산의 경우 사립유치원 강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지자체의 보조금 추가로 인한 결과임.

〈표 III-1-24〉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단위: 천원, 명

시·도	대상기관	총 대상 수	기관당 비용(1인당)	총 예산
부산	공립	-	21,368	2,841,944
	공림, 사립[1]	(매월)	500-600	2,644,800
인천	사립	-	-	279,000
광주	사립[2]	150	300	540,000
울산	공립	124	21,126(연간)	2,535,120
	사립	114	500	708,000
	공립[3]	4	20,184	80,736
	공립[4]	8	15,610	24,992
강원	공립, 사립	377	1,800	678,600
충북	모든 공립	161	23,783	3,829,077
	공립(방학중)	학급	3,000	1,347,000
충남	공립	-	29,800	4,932,500
전남	공립	527	16,437	8,662,141
경북	공립	659학급	10,200	6,721,800
제주	공립	-	(호봉별)	2,444,461
계				38,270,171

주: 1) 방과후과정 전담교사인건비 보조금' 명목. 지자체(부산시) 보조금임. 2) 지자체(광주시) 보조금임.
3) 유아특수방과후과정반 강사인건비(특수교육대상 있는 유치원)
4) 방과후과정교사 대체인건비

(3)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 개선 및 방학 중 운영 지원

□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 개선으로 부산, 대구, 인천 등 8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방학중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광주, 경기 등 6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25〉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 및 방학 중 운영 지원

단위: 천원, 명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				방학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도	대상기관	기관당 비용	총 예산	시·도	기관당 비용	총 예산
부산	공립, 사립	100,000	500,000	광주	4,000	8,000
대구	공립, 사립	10,000	250,000	경기	12,500	2,400,000
인천	공사립	공립 10,000 사립 3,000	320,000	충북	2,000	997,700
세종	공립	16,000	244,000	전남	2,000	612,000
강원	공립	25	20,000	경북	4,261	2,868,175
전북	공립	26,316	1,000,000	경남	167	1,000,000
경남	공립, 사립	833	250,000			
제주	공립	차등지원	180,000			
계			2,764,000	계		7,885,875

주: 그 외, 광주의 사립에 대한 방과후 지원 195,000천원, 울산의 방과후 교재교구지원 57,000천원이 있음.

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방과후 과정과는 별도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야간 1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시·도에 따라 조간과 야간의 돌봄서비스 전담 유치원을 선정하고 재정지원을 함.

〈표 III-1-26〉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단위: 천원, 명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아침(야간)돌봄교실		
시·도	대상기관	기관당 (연간)	총 예산	대상기관	기관당 (연간)	총 예산
서울	공립, 사립	45,000	1,650,000	-	-	-
대구	사립 일부	40,000	1,720,000	사립 일부	20,000	720,000
인천	공사립일부	10,000	840,000	1)공사립일부 2)공사립일부	5,000 10,000	583,000 900,000
광주	공립 일부 사립 일부	20,000 40,000	120,000 280,000	사립 일부 -	24,000 -	168,000 -
대전	사립 일부	30,000	180,000	공립 일부 사립 일부	9,600아침 15,000야간 9,600아침 15,000야간	67,200 45,000 364,800 240,000

(표 Ⅲ-1-26 계속)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아침(야간)돌봄교실		
시·도	대상기관	기관당 (연간)	총 예산	대상기관	기관당 (연간)	총 예산
울산	사립	4,000	24,000	공립, 사립	300~230	624,000
세종	공립	25,000	75,000	-	-	-
경기	공립, 사립	40,000	560,000	공립, 사립	22,000	1,540,000
강원	공립, 사립	40,000	360,000	공립, 사립	30,000	360,000
충북	공립, 사립	40,000	640,000	공·사립 일부	15,000아침 20,000야간	410,000
충남	공립, 사립	3,000	194,675	공립, 사립	6,000	455,000
전북	공사립일부	30,473	1,127,500	-	-	-
전남	1)공립, 사립 2)공립, 사립	12,500 15,846	85,000 618,000	- -	- -	- -
경북	공립, 사립	42,200	1,983,500	공사립일부	아침21,000 야간30,000	3,600,000
경남	공립 사립	2,333 1,408	140,000 835,000	1)공립 2)사립	1,500 1,500	180,000 1,620,000
제주	공립, 사립	30,000	90,000	-	-	-
계			11,522,675			11,877,000

주: ** 전남 - 1)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지자체 산입금, 2) 엄마품돌봄교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경남- 1), 2)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인건비 지원.
** 강원, 충남- 실제 항목명은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임.
** 인천 - 1) 아침돌봄 전담유치원, 2)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자) 기타 지원 사업

□ 앞서 제시된 여러 영역에서의 재정 지원 외에도 공·사립 유치원에 대해 교육활동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의 사업은 다음의 <표 Ⅲ-1-27>에 제시되어 있음.

○ 기타 지원 사업에는 대학생 봉사활동, 버스탑승도우미 등 보조인력 지원 인건비, 협동교육, 도서 및 자료실 조성, 공립유치원 기간제 교사 등 교육활동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있음.

〈표 III-1-27〉 기타 지원 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시·도	대상기관	대상수	기관당 비용	총 예산
급식환경개선비	부산	공립, 사립		1,616	189,072
대학생봉사활동교통비	울산	공립, 사립	20	200	4,000
학교개방의 날 운영비		공립		2,000	4,000
시간제 기간제 교사 운영	강원	공립	75	30,000	2,261,000
통원버스 탑승도우미 지원		공립	144	3.000	432,000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운영	충남	공립	10개원	800	8,000
협의회 운영	전남	공립,사립	7	4,086	28,600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공립,사립	23	420	9,660
학습준비물 및 체험학습비		공립	8,766	30	262,980
소규모협동교육		공립	29	108	3,130
교수-학습자료지원		사립	2	20,900	41,800
학습준비실조성 지원	경북	공,사립일부	20	2,500	50,000
꿈토실도서실 지정 운영		공,사립일부	12	22,500	270,000
깨끗한 학교만들기	경남	공립	19	1,083	247,000
치료지원비 지원		공립, 사립		150	27,000
장애학생치료비지원	제주	공립, 사립	25	1,200	42,000
계					3,880,242

2. 어린이집 시·도별 재정 지원

□ 어린이집에 대한 시·도청의 지원 예산을 크게 보육료, 인건비, 기능보강 및 시설, 기타 지원 등 4개 영역에서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가.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은 만 3~5세 보육료(누리과정), 만 0~2세 보육료, 장애아·방과후·시간연장 보육료, 기타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1) 2013년 만 0~5세 보육료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부모바우처로 지원되는 유아 1인당 220천원으로 전국이 동일함. 만 3~4세 보육료는 국비와 지방비(소득 하위 70%에 해

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소득 상위 30%)으로 부담하는 한편, 만 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3a:286).

○ 보육료 지원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 수준에 따라 재원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음. 서울은 보육료의 약 20%만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김은설·조혜주·이보라, 2011:16).

□ 만 0~2세의 보육료 지원(부모바우처) 비용은 만 0세가 394천원, 만 1세가 347천원, 만 2세가 286천원으로 전 지역이 동일함(보건복지부, 2013a:286). 한편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는데(보건복지부, 2013a:343), 영아 1인당 지원 단가는 만 0세가 361천원, 만 1세가 174천원, 만 2세가 115천원임. 이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상자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됨(보건복지부, 2013b:45). 따라서 정부미지원시설의 만 0~2세 보육료 지원 총액은 부모바우처로 지원되는 보육료에 기본보육료를 더한 비용인 401천원~755천원임(영아 1인당 기준).

○ 부모바우처 지원 보육료 총 예산에는 시·도에 따라 장애아 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며 서울, 대구, 세종, 충북, 경북, 제주가 이에 해당함(표 Ⅲ-2-1 참조).

○ 재원 구성 비율에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가 50~60% 대 40~5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만 국비 보조금의 비율이 20%임.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이며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뿐 아니라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및 만 6~12세까지의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도 포함됨(보건복지부, 2013a:295). 취학 장애아는 1인당 197천원, 미취학 장애아는 1인당 394천원이 지원됨.

〈표 III-2-1〉 2013년 만 0~5세 보육료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사도	누리과정 보육료		영아 보육료		그 외 보육료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5]		
	대상 수	총 예산 (1인당 월 220)	대상 수	총 예산 (1인당 월 401~755)[2]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서울	172,162	265,366,529	108,319	656,130,432①②	2,650	3,166,280	방과후
부산	27,282	24,309,640	43,192	266,539,182①	62	102,670	방과후
대구	23,482	67,286,845	34,436	174,507,000②	503	604,242	방과후
인천	33,151	85,875,380	83,912	278,528,174[3]	-	-	-
광주	20,700	33,056,298	69,718	258,949,204	-	-	-
대전	17,345	22,024,143	53,074	217,561,077	50	60,000	방과후
울산	12,311	32,306,485	18,972	107,612,477①	-	-	-
세종	2,359	7,510,150	2,398	10,114,152②	0	57,600	방과후
경기	374,272	1,125,659,780[1]	-	-	-	-	-
강원	21,000	36,729,656	22,000	119,865,922①	181	200,000	방과후
충북	24,392	80,234,629	44,712	126,701,965[4]②	1,305	97,648	방과후
충남	31,089	89,494,414	63,775	187,898,000	-	-	-
전북	24,474	68,069,297	30,934	164,733,238①	2,862	1,792,536	장애아, 시간연장
전남	26,673	61,159,199	27,408	136,783,187①	1,146	2,858,350	장애,방과후, 시간연장
경북	24,600	45,646,000	50,957	273,180,743①②	540	648,000	방과후
경남	30,875	84,497,663	54,776	365,457,080①	-	-	-
제주	12,462	33,256,662	12,894	71,539,770①②	136	108,000	방과후
계		2,162,482,770		3,289,906,708		9,695,326	

주: 1) 경기 누리과정 보육료 총 예산에는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후 보육료가 모두 포함됨.
2) 영아 보육료 지원 단가: 401천원(만 2세), 521천원(만 1세), 755천원(만 0세). 이 중 '부모바우처'로 지원되는 비용의 단가는 286천원(만 2세), 347천원(만 1세), 394천원(만 0세)임.
①서울,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부모바우처 지원 예산만 보고하였음.
②서울, 대구, 세종, 충북, 경북, 제주의 영아 보육료 총 예산에는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료가 포함됨.
3) 1~7월 실적 기준임. 4) 8월 기준임.
5) 지원 단가: 장애아 197천원~394천원, 방과후 100천원, 시간연장 162천원~222천원임.

□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며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보건복지부, 2013a:295). 지원액은 정부지원시설[3]의 경우 월 10만원이며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별 만 5세 보육료 수납한

3)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3a:85). 따라서 일반아동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비의 부담으로 월 10만원이 지원되며(전 지역 동일), 장애아동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형태로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50%(197천원)가 지원되는 바임.

□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여 지원됨(보건복지부, 2013a:298).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시간당 3,700원을 지원받으며(보건복지부, 2013a:298), 지원한도액은 일반아동 162천원, 장애아동 222천원임(표 Ⅲ-2-1 참조).

2) 기타 보육료 지원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은 정부 미지원시설(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와 시설별 수납액과의 차액을 의미함(경기도교육청 보육정책과 면담자료. 2013. 8. 30. 면담).

〈표 Ⅲ-2-2〉 기타 보육료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시·도	항목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서울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3.4~4.3	3,816	1,085,508	
인천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33~50	440	910,080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기타 경비	50~70	1,922	2,608,000	만 0~5세
대구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	500	420,000	
대전	셋째아 이후 보육료	1.8~4.6	450	1,080,000	
울산	장애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의 25~50%		240	220,000	무상보육 외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19~49	380	218,000	
세종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기타 경비	40	-	48,000	만 0~5세
경기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30	134,370	42,049,440	민간, 가정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33~58	3,661	2,177,729	만 3~5세
충남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료차액	20	12,500	3,000,000	만 3~5세
전남	셋째아 이후 보육료	10~50	303	337,200	나주시, 고흥군
제주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32~53	288	66,796	
계				54,220,753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함(보건복지부, 2013:270).

○ <표 Ⅲ-2-2>에 의하면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경기 지역에서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을 3.4~58천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 지역 특색사업으로 대전과 전남은 셋째아 이후 보육료를 지원함. 이는 영유아 보육료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비용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있음(표 Ⅲ-2-2 참조).

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기본 인건비 지원과 수당 지원으로 나누어 알아봄.

1) 기본 인건비 지원

□ 기본 인건비 지원 항목에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교사 지원, 영아전담어린이집 교사 지원,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교사 지원, 시간연장 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도우미 지원이 있음.

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교사 지원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지원)의 기관이 해당되며 교사인건비는 원장,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 방과후반 교사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13:311~312).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교사 인건비로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에 대해 인건비의 각 80%, 30%를 지원함. 방과후반 교사에 대해서는 2004년 이전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 시설에 한하여 교사 인건비의 50%를 지원함(보건복지부, 2013:312).

○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국고보조금 대 지방비의 구성 비율이 46~60% 대 40~54%임(표 Ⅲ-2-3 참조). 부산시는 기장군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각각 50%의 비율로 책정하고 있음.

〈표 III-2-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교사 인건비 지원

단위: 천원, 명, %

시·도	대상 수	총 예산[1)]	재원 (국고:시도:시군구)
서울	7,046	148,842,394①	20 : 40 : 40
부산	2,242	55,210,247①	60 : 28 : 12[2)]
대구	2,224	25,102,882	60 : 28 : 12
인천	1,746	27,449,761	59 : 28 : 13
광주	2,440	35,577,504	60 : 28 : 12
대전	1,615	20,664,188	60 : 28 : 12
울산	807	16,442,508①	56.4 : 26.9 : 16.7
세종	238	3,119,536	46 : 54 : 0
경기	6,008	93,716,314	50 : 25 : 25
강원	2,496	5,069,401	50 : 15 : 35
충북	1,660	27,807,971	50 : 25 : 25
충남	1,905	33,596,738	50 : 15 : 35
전북	1,930	32,245,663	52 : 24 : 24
전남	3,540	47,132,240	50 : 25 : 25
경북	3,910	51,367,018	50 : 15 : 35
경남	2,713	36,929,658	50 : 20 : 30
제주	1,778	22,740,214	50 : 50 : 0
계		666,571,729	

주: 1인당 지원 단가는 인건비의 30~80%임.
1) ①서울, 부산, 울산의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총 예산은 영아전담, 시간연장, 장애아교사 인건비가 포함된 비용임.
2) 부산시 기장군은 50:25:25(%) 비율로 책정되어 있음.

나) 영아전담어린이집 교사 지원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해당함(보건복지부, 2013:326).

□ 인건비는 원장 및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며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어린이집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3:326).

○ 영아전담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총 예산은 지역의 규모 및 대상 수에 따라

약 48억원~110억원까지 책정되어 있음.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의 지원 대상 수가 700명 이상으로 비교적 많은 편임(표 Ⅲ-2-4 참조).

〈표 Ⅲ-2-4〉 영아전담어린이집 교사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시·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서울		439	-[1]	
부산		721	-[2]	취사부[3] 포함
대구		501	8,841,519	
경기		457	9,213,972	
강원		283	5,088,778	
충북	인건비 30~80%	289	6,052,666	
충남		115	6,578,116	
전북		218	5,884,951	
경북		303	4,799,677	
경남		704	11,872,790	
제주		295	5,532,624	
계			63,865,093	

주: 1), 2) 서울, 부산의 영아전담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예산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총 예산에 포함되어있음.
3) 취사부는 인건비의 100%를 지원함.

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교사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월 지급액의 80%임(보건복지부, 2013:316). 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 정부지원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월 130만원을 지원함(보건복지부, 2013:316).

○ 울산과 제주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전담 교사에 대해 지방비로 1인당 각 50천원, 150천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장애아통합반 담임 교사수당으로 1인당 50천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음(표 Ⅲ-2-5 참조).

〈표 III-2-5〉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교사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시·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서울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617	-[1]	장애아전문·통합
부산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260	-[2]	장애아전문·통합
대구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449	7,963,166	장애아전문
		63	1,101,760	장애아통합
울산	50	200	120,000	장애아전문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150	-[3]	장애아통합
세종	50	2	54,510	장애아통합
경기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853	11,294,108	장애아전문·통합
강원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70	1,264,080	장애아전문·통합
충북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130	3,318,438	장애아전문·통합
충남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179	3,281,100	장애아전문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24	490,590	장애아통합
전북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202	3,575,739	장애아전문·통합
경북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417	6,697,383	장애아전문·통합
경남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290	6,765,566	장애아전문·통합
제주	150	63	1,384,252	장애아전문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00	31	541,950	장애아통합
계			47,852,642	

주: 1), 2), 3) 서울, 부산, 울산의 장애아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예산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총 예산에 포함되어있음.

라)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임(보건복지부, 2013:329).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월 급여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와 근무수당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의 예산 및 재원이 다름. 월 급여 형태의 지원은 17개 시·도의 지원 단가가 동일한 반면 근무수당 형태의 지원은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역에 따라 예산이 각기 다르게 책정됨.

○ 월 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은 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민간어린이집은 교사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함(보건복지부, 2013:329).

○ 세종과 경북은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4]에 대해 학급 당 월 400천원을 지원하며, 서울과 대전은 해당 교사에 대해 1일 50천원에 해당하는 시간연장 수당을 지원하고 있음(표 Ⅲ-2-6 참조).

〈표 Ⅲ-2-6〉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사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서울	80%/1,200	1,365	-[1]	휴일(정부미지원 시설 24시간제)
	1일 50[1]	209	2,346,240	
부산	80%/1,200	277	-[2]	
대구	80%/1,200	387	3,819,135	
대전	1일 50[2]	47	705,000	국공립, 법인
울산	80%/1,200	886	-[3]	
세종	400[1]	37	376,050	
경기	80%/1,200	2,332	23,707,280	
강원	80%/1,200	212	2,193,116	
충북	80%/1,200	360	4,111,916	
충남	80%/1,200	324	3,384,442	
전북	80%/1,200	484	6,529,027	
경북	400[4]/80%/1,200	621	6,348,819	
경남	80%/1,200	1,234	8,146,038	
제주	80%/1,200	259	1,765,884	
계			63,432,941	

주: 1), 2), 3) 서울, 부산, 울산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총 예산에 포함되어있음.
4) 인건비 외 수당에 해당함.

마) 대체교사 지원

□ 대체교사 지원은 정부 주도 사업 중의 하나로, 보육교사가 연가를 사용할 경우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보건복지부, 2013:378).

○ 지원 단가는 월 1,569천원~1,590천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비슷함. 세종시는 보육정보센터가 없으므로 대체교사 수당으로 1일 40천원을

4)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보건복지부, 2013:330)

신청한 월에 따라 지급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임.

○ 이 외에 서울, 인천, 세종, 충남, 경북, 경남은 지자체 특수사업으로 별도의 대체교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1인당 약 40천원~50천원임(표 Ⅲ-2-7 참조).

〈표 Ⅲ-2-7〉 대체교사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시·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서울	1,569	71	-[1)]	
	1일 50	31,168	2,124,000	정부지원시설(서울형 포함)
부산	1,569	28	532,640	
대구	1,569	18	365,756	
인천	1일 45	330	77,414	상해보험료(1인당 7일×9천원) 추가 지원
광주	1,569	18	304,466	
대전	1,569	17	319,688	
울산	1,569	-	189,614	
세종	1일 40	0	13,968	
경기	1,569	75	1,721,495	
	1일 58	62,165	3,356,667	
강원	1,569	11	161,092	
충북	1,576	11	220,884	
충남	1,569	1,034	627,336	
	1일 40	-	-	도비사업
전북	1,590	21	324,906	
전남	1,569	11	170,710	
경북	1,523	16	283,000	
	인건비 30~80%	25	348,464	국공립, 법인
경남	1,569	32	400,000	
	1일 40	1,000	-	여름휴가/연 1회
제주	1,576	9	171,166	
	600	-	99,000	출산휴가 등
계			11,832,266	

주: 1) 서울의 대체교사 인건비 예산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총 예산에 포함되었음.

2) 수당 지원

□ 수당지원 항목에는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보육도우미 지

원, 기타 인건비보조금 지원이 있음.

가)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

□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3:269)에 따르면 각 시·도에서는 만 3~5세에 대한 전체 예산 중 보육료를 제외한 비용에서 각 시·군·구별로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를 월별로 지급함.

○ 누리과정 담당교사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교사 1인당 월 200천원~300천원임.

〈표 III-2-8〉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시·도	대상 수	총 예산
서울	141,059	83,734,000
부산	2,000	5,947,200
대구	1,837	5,076,745
인천	2,229	3,231,110
광주	1,456	17,239,228
대전	1,000	6,952,150
울산	12,311	4,431,960
세종	156	756,000
경기	11,395	33,618,100
충북	1,550	-[1)]
충남	1,950	-[2)]
전북	1,359	4,099,000
전남	1,928	6,300,000
경북	2,071	6,513,000
제주	791	2,641,000
계		180,539,493

주: 1인당 지원액은 월 200천원~300천원임.
1), 2), 3) 충북, 충남, 제주의 누리과정 담당교사 인건비는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총 예산에 포함.

○ 지원받는 대상이 많음에 따라 서울시의 누리과정 담당교사 인건비 예산이 83,734,000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세종과 제주의 경우 대상 수 및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음(표 III-2-8 참조).

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정부에서 기본급 이외의 비용을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따라 지원 단가는 상이함. 1인당 지원액은 2천원~195천원으로 지역에 따라 지원 단가 및 예산에 차이가 있음(표 Ⅲ-2-9 참조).

〈표 Ⅲ-2-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

사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재원 (국고:시도:시군구)	비고
서울	100~195	34,788	37,148,160	0 : 50 : 50	
부산	50-100		7,378,000		민간, 가정 복리후생비
대구	80	5,208	5,000,000	0 : 50 : 50	대체교사, 시간연장교사, 방과후교사 포함
인천	100~170	8,259	14,916,000	0 : 50 : 50	영아반 교사
	20~90	1,899			누리과정 담당교사
광주	2~10	4,239	3,600,000	0 : 50 : 50	
	20	927	228,920	0 : 0 : 100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해당
대전	50	8,000	4,800,000	0 : 100 : 0	
울산	120	3,710	5,342,400	0 : 50 : 50	민간, 가정
세종	150	720	2,400,000	0 : 100 : 0	
경기	60~110	11,395	1,269,900	0 : 30 : 70	누리과정 담당교사
강원	100	4,121	4,945,600	0 : 20 : 80	민간
충북	60~130	7,860	6,636,240	0 : 40 : 60	원장, 교사, 영양사, 간호사 포함
전남	30~100	1,292	2,129,880	0 : 0 : 100	순천, 나주, 화순, 목포(민간 등)에 해당, 영아장애아전담교사 포함
경북	70~90	12,300	9,710,325	0 : 30 : 70	대체교사, 특수교사 포함
경남	20~40	45,426	14,340,000	0 : 30 : 70	
제주	80~340	4,783	6,022,500	0 : 100 : 0	읍면지역, 처우개선비, 교직원 교통수당, 장애아전문교사수당
계			125,867,925		

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12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 해야 함(보건복지부, 2013:378).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 또는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으므로 제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교사겸직원장은 월 75천원,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는 월 120천원 지원받음.

〈표 III-2-1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시·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서울	75~120	36,354	33,249,098
부산	75~120	8,150	10,095,025
대구	75~120	7,681	9,102,000
인천	75~120	9,297	10,428,183
광주	75~120	7,161	6,645,000
대전	75~120	6,796	6,728,334
울산	120	3,061	4,843,246
세종	75~120	494	828,000
경기	75~120	47,010	38,963,977
강원	75~120	4,645	6,350,000
충북	75~120	6,550	6,500,988
충남	75~120	9,122	9,944,000
전북	120	7,188	7,593,827
전남	75~120	6,744	7,479,044
경북	75~120	9,878	11,861,364
경남	75~120	12,600	17,464,000
제주	75~120	2,867	3,772,000
계			191,848,086

주: 교사겸직원장: 월 75천원,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월 120천원 지원.

라)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따라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함.

○ <표 Ⅲ-2-11>에 따르면 세종시는 시에서 장기근속 수당을 전액 지원하며 대구, 광주, 대전시는 시·군·구에서 수당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

〈표 Ⅲ-2-11〉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

사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재원 (시도:시군구)	비고
대구	30~50	648	336,000	0 : 100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30	90	48,600	0 : 100	민간
대전	30	1,026	369,360	0 : 100	
울산	50	200	120,000	50 : 50	
세종	30	89	37,080	100 : 0	
계			911,040		

마) 보육도우미 지원

□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은 지자체 사업으로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형을 포함한 정부지원시설을 대상으로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은 영아전문 및 영아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시 자체 예산으로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광주 또한 시 예산으로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며 대전은 시와 군구청 예산으로 보육도우미, 가정양육도우미 및 가정 양육도우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표 Ⅲ-2-12 참조).

〈표 Ⅲ-2-12〉 보육도우미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시·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서울	800~1,050	2,235	23,169,510	정부지원시설(서울형 포함)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부산	1일 25	100	300,000	영아전문어린이집 등
광주	1,520	18	300,000	
대전	1일 45	65	190,126	보육 및 가정 양육도우미 파견
계			23,959,636	

바) 기타 인건비보조금

□ 지금까지 살펴본 인건비 외에 지원되는 인건비보조금의 항목들이 존재함. 이는 특별근무수당,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교사, 보조교사, 도시지역 근무수당,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운전원 인건비, 종교시설 인건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방과후시설 인건비, 보육교사 아이사랑 수당,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로 다양하며 주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표 Ⅲ-2-13 참조).

〈표 Ⅲ-2-13〉 기타 인건비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시·도	1인당 지원액	총 예산	비고
특별근무수당	부산	100	15,000	장애아통합
	대구	100	324,000	장애아통합
	인천	110	79,200	농어촌, 강화군
	세종	50	72,600	동지역 시설
	전북	1,434	68,832	장애아통합
	경북	40~110	360,000	장애아통합
	제주	100	74,400	장애아전문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울산	인건비 20%	40,000	
공공형 어린이집	울산	400	192,000	
	경기	50~80	3,120,000	
외국인 근로자 자녀 지원	경기	1,016	536,350	
보조교사	부산	25	300,000	
	대전	500	600,000	
	울산	80	360,000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강원	50	840,000	
운전원	울산	1,500	144,000	
	충북	1,000	118,000	
	전남	645	30,990	
	제주	517 개소당 1,000	1,645,200 48,000	취사부 포함 장애아전문
종교시설	서울	인건비 30~80%	441,028,000	
방과후시설	대구	차등 330	18,067 31,634	 민간
	세종	-	41,142	선정시설
보육교사 아이사랑 수당	광주	30	78,000	

○ 부산, 대구, 전북, 경북 지역은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교사에 대해, 제주도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인천시는 강화군에 있는 농어촌 시설 보육교사에 대해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며 세종시는 동지역시설 보육교직원 근무수당으로 시에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종교시설과 서울형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 인건비의 30~80%의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하며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둔 보육교사에 대해 1인당 1,016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함.

○ 강원도는 보육교직원 격무수당을 연 2회(설, 추석)에 걸쳐 지원하고 있음.

다. 어린이집 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

□ 어린이집 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 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일반 운영비 지원과 추가 지원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1) 일반 운영비 지원

□ 일반 운영비 지원에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평가인증시설 운영비,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의 5개 항목이 해당됨.

가)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비

□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비에는 설치비,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의 지원이 포함됨. '201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국비사업인 경우 1개소당 개보수비 30,000천원, 장비비 2,000천원을 국비와 지방비의 형태로 지원하게 됨. 시·도별 지원 현황을 <표 Ⅲ-2-14>에 제시하였음.

○ 서울은 증·개축이 필요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이와 같이 선정 시설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바임. 장애아시설 장비비 지원은 1개소당 3,000천원~4,000천원으로 일반 어린이집 지원 단가인 2,000천원보다 1,000천원~2,000천원 더 많은 비용을 지원받음을 알 수 있음.

○ 세종시는 민간 어린이집 선정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비를 시비로 지급하

며 전북 또한 선정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비를 도비로 지원함.

〈표 III-2-14〉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소

시도	국공립/법인				민간			
	1개소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1개소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서울	2,000~30,000	154	1,903,000		-	-	-	
	3,000~30,000	22	93,000	장애아				
부산	2,000~44,800	26	696,800		3,000	10	30,000	영아
	30,000	1	30,000	장애아				
	10,000	12	6,000	초등학교 내 공립				
대구	1,000~99,000	27	643,150	선정 시설	-	-	-	
	3,000~30,000	3	36,000	장애아				
인천	1,000~99,000	19	314,000	선정 시설	-	-	-	
	3,000~30,000	4	39,000	장애아				
울산	20,000~30,000	17	4,572,246		-	-	-	
세종	-	-	-		1,000	50	50,000	선정 시설
경기	2,000~99,190	151	6,618,513		3,000~30,000	21	117,000	0세 전용
	500,000	13	12,000,000	공립(신축)				
강원	-	48	1,774,664		-	-	-	
	3,000	50	6,000	장애아				
충북	-	39	946,380		3,000	31	93,000	공공형
	-	4	39,000	장애아				
충남	751~50,000	52	3,116,930		-	-	-	
	3,000~30,000	5	42,000	장애아				
전북	-	1	25,000	선정시설	-	-	-	
전남	-	48	2,813,740		-	-	-	
	-	3	36,000	장애아				
	5,000	7	35,000	놀이터 설치대상				
경북	2,000~90,000	54	2,169,430		-	-	-	
경남	1,000~99,000	42	1,547,142		30,000	3	1,051,998	
제주	2,000~99,190	33	759,000		3,000~30,000		432,200	
계			40,261,995				1,774,198	

○ 경기도는 도내 산업단지 등 보육취약지역에 공립 어린이집 13개소 신축을 위하여 12,000,000천원의 예산을 책정함. 충북은 공공형 어린이집(민간, 가정) 31개소의 환경개선비를 도 및 시비를 통해 지원하였고 전남은 시·군·

구 사업으로 놀이터설치대상 어린이집(신안군) 7개소에 대해 총 3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사업임(보건복지부, 2013a:383). 선정 대상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만 해당됨.

〈표 III-2-15〉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소, %

시·도	대상 수	총 예산	재원(국고:시도:시군구)
서울[1)]	-	9,477,915	-
부산	74	2,230,861	60 : 28 : 12
대구	70	3,720,000	60 : 28 : 12
인천	31	3,116,667	60 : 28 : 12
광주	30	1,736,667	60 : 28 : 12
대전	67	2,936,667	60 : 28 : 12
울산	60	2,879,604	57 : 27 : 16
세종	8	434,000	50 : 50 : 0
경기	400	10,967,600	50 : 25 : 25
강원	96	3,328,000	50 : 15 : 35
충북	31	2,212,116	50 : 25 : 25
충남	57	3,054,000	50 : 15 : 35
전북	60	3,293,850	66 : 17 : 17
전남	45	2,881,475	50 : 25 : 25
경북	82	5,352,000	50 : 15 : 35
경남	120	6,970,000	50 : 20 : 30
제주	60	2,858,000	50 : 50 : 0
계	-	57,971,507	

주: 지원 단가는 2013년 6월까지 960천원~8,700천원이었으며 2013년 7월부터는 1,160천원~8,750천원으로 지원액이 증가함. 1)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임.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2013년 6월까지 정원에 따라 개소당 960천원~8,700천원으로 차등 지원되었으나(보건복지부, 2013:383) 2013년 7월부터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현재 1,160천원~8,750천원으로 시설별 차등 지원받고 있음.

○ 지역별 국고보조금은 약 50~60%이며,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관에 대해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은 국고사업 외에 지자체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Ⅲ-2-15>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의 총 예산은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을 포함한 비용임.

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낸·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3:390).

○ 어린이집 규모와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1개월을 기준으로 최소 200천원부터 최대 280천원까지임.

○ <표 Ⅲ-2-16>에 의하면 전남, 충남, 강원과 충북 순으로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울산, 세종, 부산은 지원 대상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표 Ⅲ-2-16〉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소

시·도	대상 수	총 예산
부산	11	26,494
울산	8	21,096
세종	8	21,196
경기	42	118,338
강원	86	227,850
충북	86	227,850
충남	108	288,786
전북	84	218,578
전남	127	336,476
경북	50	132,470
경남	67	177,510
제주	44	198,706
계		1,968,856

주: 1개소당 지원액은 200천원~280천원임.

라) 평가인증시설 운영비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중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 및 평가인증 유지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3:239).

〈표 III-2-17〉 평가인증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시·도	1개소당 지원액	총 예산	비고
인건비	인천	100	350,000	
		30	54,000	인센티브, 계양구
		50	499,800	연구 활동비, 서구
인건비	광주	200	400,000	
	세종	500	403,200	
	전북	100	17,359,000	
	전남	20~50	1,582	
환경개선비	대구	-	40,000	
	대전	1,000~1,500	395,000	
	충북	2,000	214,500	
	전북	-	1,517,500	
	경북	1,000	500,000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운영비	부산	30	4,000	
	인천	50	150,000	
	대전	400~600	494,000	
	울산	50~1,200	356,898	
	경남	40,000	80,000	
냉·난방비	인천	200~2,000	1,400,000	평가인증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시설
	대전	70~380	192,250	
	강원	450	436,500	
시설참여 수수료	충북	250~300	49,350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전북	-	210,000	
차량유지비	경북	200	290,000	
어린이집 운영비	제주	500~1,500	177,400	3년에 1회
계			25,574,980	

□ <표 III-2-17>은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현황을 나타낸 자료로, 지원되는 항목은 환경개선비,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습운

영비, 냉·난방비, 평가인증시설 참여 수수료,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음.

○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항목은 환경개선비로, 1개소당 1,000천원~2,000천원까지 차등 지원됨. 또한 인건비에는 인센티브, 연구 활동비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항목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있음.

마)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 앞서 제시한 공공형 및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외에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 현황을 <표 Ⅲ-2-18>에 제시하였음.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시에서 7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부산형 어린이집 11개소의 운영비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바임.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된 영월군의 1개소에 대해 정부지원 50%와 지방비 50%의 비율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강원도민일보 보도자료, 2013. 6. 3., 2013. 9. 9. 검색).

〈표 Ⅲ-2-18〉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또는 개소)

사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서울	150~200	11,155	44,467	영아 및 장애아반
	인건비 100%	5	662,524	365일 열린 어린이집
	37.8	370	362,880	영아전담 어린이집
부산	4,000~8,000	11	1,122,000	공보육(부산형)어린이집
인천	-	61(개소)	796,338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경기	1,900	164(개소)	8,366,669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200	2,064	4,634,400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강원	4(시간당)	1(개소)	81,230	일시보육
제주	600	404	915,200	취약보육실시 어린이집
계			16,985,708	

2) 추가 지원

□ 추가 지원에는 교재교구비, 누리과정 운영비, 차량운영비 및 유지비,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냉·난방비, 안전관련 비용의 6개 항목이 포함됨.

가) 교재교구비

□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시설은 민간어린이집 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해당함(보건복지부, 2013a:351). 이 중 장애아전문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 중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됨(보건복지부, 2013a:351).

○ 규모에 따라 500천원~1,200천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3a:352).

□ 한편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등)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비 교재교구비 지원에서 제외된 어린이집(공립, 민간영아전담, 운영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1개소당 지원액 및 예산 책정에 차이가 있음. 결과를 <표 Ⅲ-2-19>에 제시함.

〈표 Ⅲ-2-19〉 교재교구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소, %

사도	민간 등			정부지원시설			
	1개소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1개소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재원 (시도:시군구)
서울	500~1,200	3,034	2,708,136	-	-	-	-
부산		707	692,918	200~300	290	294,500	100 : 0
대구		742	731,150	-	110	200,000	50 : 50
인천		1,630	906,470	-	-	-	-
광주		910	557,315	1,000	184	165,600	50 : 50
대전		925	763,232	700	45	67,200	50 : 50
세종		49	50,408	-	-	-	-
경기		5,902	4,941,203	-	-	-	-
강원		520	510,996	-	251	265,700	20 : 80
전북		834	672,977	-	-	-	-
충북		741	455,744	-	-	-	-
충남		1,137	1,041,774	-	-	-	-
전남		504	482,267	-	-	-	-
경북		1,282	1,062,052	700	285	200,000	30 : 70
경남		1,589	1,412,596	-	-	-	-
제주		288	282,646	연2,000	147	294000	100
계			17,271,884			1,487,000	

2) 차량운영비 및 유지비

□ 차량운영비는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및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개소당 연 240만원(월 20만원)이 지급됨.

○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서울시가 20%를 지원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는 50~60% 수준임. 대구(달서구)와 대전 및 경북은 지방비로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전남은 시·도 30%, 시·군·구 70%의 비율로 시 단위 어린이집 중 정부인건비지원 시설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함.

○ 경북은 이 외에도 다문화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로 영유아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음(표 Ⅲ-2-20 참조).

〈표 Ⅲ-2-20〉 차량운영비 및 유지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소, %

사도	농어촌/장애아전문				국공립/법인		
	1개소당 지원액	대상수	총 예산	재원 (국고:시도:시군구)	1개소당 지원액	대상수	총 예산
서울		7	22,400	20:40:40			
부산[1)]		77	185,228	60:28:12			
대구		81	190,724	60:28:12	60	20	13,680
인천[1)]		32	47,258	51:25:24			
광주		11	33,029	60:28:12			
대전		4	11,960	60:28:12	1,800	45	81,000
울산		98	234,734	57:27:16			
세종		57	93,888	50:50: 0			
경기	200	1,028	2,546,925	50:25:25			
강원		203	485,551	50:15:35			
충북		422	474,931	50:25:25			
충남		655	1,193,580	50:15:35			
전북		255	382,918	54:23:23			
전남[1)]		279	658,729	50:25:25	200	86	206,400
경북		453	1,087,176	50:15:35	200	725	290,000
경남		837	1,550,342	50:20:30			
제주		310	519,318	50:50: 0			
계			9,718,691				591,080

주: 1) 부산, 인천, 전남은 정부지원어린이집에 해당함.

6) 누리과정 운영비

□ 3-5세 누리과정 운영비로 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은 유아 1인당 40~70천원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표 Ⅲ-2-21>에 의하면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비 총 예산은 약 1,440억원 이상임을 알 수 있음.

〈표 Ⅲ-2-21〉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사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서울	70	113,639	-[1)]
부산	49	24,466	13,153,260
대구	51	25,154	13,726,015
인천	70	33,151	7,910,650
울산	40	3,668	37,080
세종	-	45(개소)	924,000
경기	70	163,180	84,125,555
충북	40~50	24,392	-[2)]
전북	70	978	9,243,500
경북	70	12,300	8,610,000
제주	50~60	-	6,347,000
계			144,077,060

주: 1), 2) 서울, 충북의 누리과정 운영비 예산은 누리과정 교사수당 및 누리과정보육료 총 예산에 포함되어있음.

7)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 <표 Ⅲ-2-22>는 국고사업 및 지자체 특색사업으로 지원되는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현황을 나타낸 자료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남은 정부로부터 약 50%의 예산을 지원 받아 기자재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과 경기의 기자재 구입 지원 예산이 비교적 높음을 볼 수 있음. 전남은 국비사업 외에도 곡성군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도서구입비로 광주는 410,400천원, 대전은 26,400천원의 예산을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시비로 지원됨.

〈표 III-2-22〉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소

사도	기자재				도서구입비		
	1개소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1개소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서울	30,000~60,000	43	2,080,000	국공립	-	-	-
부산	4,000~6,000	6	280,000	국공립, 법인	-	-	-
대구	40,000	1	40,000	국공립	-	-	-
인천	40,000	11	515,000	국공립, 법인	-	-	-
광주	-	-	-		500	910	410,400
대전	-	-	-		130	1,630	26,400
경기	60,000	15	900,000	국공립	-	-	-
강원	-	3	110,000		-	-	-
전남	-	7	160,000	국공립(곡성군 포함)	-	-	-
경남	30,000	3	120,000	국공립	-	-	-
제주	2,000	147	294,000	국공립,법인	-	-	-
계			4,499,000				436,800

8) 냉·난방비

□ 대구와 세종시를 비롯하여 대부분 지역의 1개소당 지원액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전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경우 장시간 운영하는 시설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인 4,995천원이 연 1회 지원되고 있음. <표 Ⅲ-2-23>은 냉·난방비 지원 현황을 나타낸 자료임.

〈표 III-2-23〉 냉·난방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소

시·도	1개소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대구	-	140	81,000	달성군 해당
인천	300	12	14,400	옹진군 해당
대전	70~450	793	187,500	동구, 서구 해당
	4,995	47	234,766	국공립, 법인(시간연장형)
세종	-	115	67,200	
전남	80~120	65	39,000	영아장애아전담
경남	200~300	2,200	530,000	민간, 가정
제주	400~1,000	520	324,600	
계			1,478,466	

9) 안전관련 비용

□ 안전과 관련된 지원 항목은 크게 전기·가스, 석면 및 실내공기질 조사 비용, 안전공제비, 안전보험료, 안전장치 설치비로 나누어볼 수 있음. 이는 시·도별 특색사업으로 지원되는 항목임.

○ 안전공제비는 광주의 경우 교직원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12천원이며 평가인증시설에 한해 지원됨. 충북과 경북은 영유아 1인당 지원액이 2,500원인 것을 알 수 있음(표 Ⅲ-2-24 참조).

〈표 Ⅲ-2-24〉 안전관련 비용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소(또는 명)

항목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전기·가스 (모든 시설)	1개소당 지원액		37~56				
	대상 수		419				
	총 예산		29,521				
석면 및 실내공기질 조사비용	1개소당 지원액			200			
	대상 수			634			
	총 예산			126,800			
안전공제비	1명당 지원액	12[1)]		2.5[2)]		2.5[2)]	
	대상 수	9,190		52,000		73,000	
	총 예산	34,000		130,000		182,000	
안전보험료	1개소당 지원액						-
	대상 수						116,500
	총 예산						568,336
안정장치 설치[3)]	1개소당 지원액				3,500		
	대상 수				4		
	총 예산				14,000		

주: 1) 교직원 1명당 지원액 기준임.
2) 영유아 1명당 지원액 기준임.
3) 전남의 안전장치 설치 대상은 민간, 가정 법인단체에 해당함.

라. 기타 지원

1) 아동 간식비

□ 시·도 및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아동간식비 지원 현황을 <표 Ⅲ-2-25>에 제시함.

○ 대구시 동구는 모든 시설의 만 2세아에 대해(1인당 6,000원), 서구는 관내 어린이집의 만 0~2세 아동에 대해 간식비(1인당 3,700원)를 월 지급하며 수성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비(1인당 3,200원)를 지원하고 있음. 대전은 장애아전문·통합 및 영아전문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비를 지원하며 전남 여수시는 장애아 및 영아(0~1세), 저소득층 아동 1,950명에 대해 1일 3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함. 경북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월 80천원을 도 및 시비로 지원하고 있음.

〈표 III-2-25〉 아동 간식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명

시·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비고
대구	3.2~6.0	14,400	518,400	동구, 서구, 수성구에 해당
대전	15	1,402	252,360	장애아, 영아전문어린이집
전남	0.3[1)]	1,950	175,500	여수시에 해당
경북	80.0	77,599	8,333,000	
계			9,279,260	

주: 1) 1인당 1일 지원 기준

2) 저소득층 아동 지원비

□ 각 시·도별 저소득층 아동 지원 항목은 크게 입소료, 현장학습비, 아동간식비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지원 현황을 <표 III-2-26>에 제시함.

〈표 III-2-26〉 저소득층 아동 지원비 현황

단위: 천원, 명

시·도	입소료			현장학습비			아동간식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서울	-	-	-	20	4,025	966,000	-	-	-
대구	-	-	-	-	-	-	1.7~4.5	18,715	453,600
대전	-	-	-	-	-	-	15	4,042	582,048
울산	90	1,550	265,050	57	1,550	265,050	-	-	-
세종	-	-	-	-	49	50,408	-	-	-
강원	70	3,020	211,400	-	-	-	-	-	-
전남	-	-	-	-	-	-	0.5	220	75,000
계			476,450			1,281,458			1,110,648

○ 세종시는 정원에 따라 현장학습비를 지원하며 서울시는 신청을 받아 모든 시설의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1인당 20천원의 비용을 지원함.

○ 대구시 남구는 저소득 보육료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만 0~2세 및 장애아동의 간식비(1인당 4,500원)를 지원하며 북구와 중구, 달서구는 저소득층 아동의 간식비로 1인당 1,700원(북구)과 2,000원(중구, 달서구)을 매달 지급하고 있는 바임.

3) 기타 지원

□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집 지원 외에 각 지자체의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항목들을 <표 Ⅲ-2-27>에 제시함. 시·도 및 시·군·구별 특수사업에는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재교구 개발평가 및 전시회(대전), 우수교재교구 경진대회(전남) 뿐 아니라 공립시설 특활 프로그램(대전), 경북 어린이집 활성화 프로그램(경북), 다문화보육 프로그램(경북)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음.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Ⅲ-2-27〉 기타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소

시·도	항목	총 예산	비고
서울	보육교사 중식비	4,500,000	
부산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12,500	시간연장, 24시간 보육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30,000	
대구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33,000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활성화	85,000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아동 현장학습비	6,300	북구, 달서구
	어린이집 간행물구독료	8,232	동구
	공립시설 특활 프로그램 운영	6,000	달서구
	보육시설 방역 소독	28,000	달성군
인천	도서지역 구립어린이집 운영	6,000	중구
	정기 살균소독	180,680	동구, 연수구
	보육교사 장려수당	1,063,200	계양구, 강화군
	평가인증 어린이집 학습운영비	150,000	남동구
세종	환경개선비 보조	188,000	
전남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대축제	38,000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	55,000	
	보육시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	11,032,000	

(표 Ⅲ-2-27 계속)

시·도	항목	총 예산	비고
경북	경북 어린이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0,000	
	장애아보육 프로그램 운영	15,000	
	다문화보육 프로그램 운영	35,000	
	다문화아동 재원 어린이집 차량운영	480,000	
제주	어린이집 교직원 한마음 대회	29,000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회 지원	12,000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50,000	
	어르신과의 영유아 결연사업	8,000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900,000	
계		18,960,912	

3. 소결

□ 본 연구에서 유치원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지원은 예산 구조로 볼 때 크게 네 가지 즉, 학비, 인건비, 교육활동, 기관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주: 2012년 예산분류에 의함).

○ 학비는 아동에 대한 지원임. 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전체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서, '누리과정 유아학비'가 있고,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전체 유아 중 62%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방과후 과정 지원', 그리고 지역에 따라 학비에 포함되지 않고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급·간식비에 대한 차등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인건비는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에게 직접 비용이 지급됨. 유치원은 공립 혹은 사립이라는 설립유형에 따라 인건비 지원이 차이가 있는 바, 공립유치원 교사에게는 급여 100%가 지원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는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교직수당이 시·도에 따라 차이나게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대체로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원되는 이 세 가지 수당은 총합 46만원 내지 51만원까지로 조사됨.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모든 교사는 개인별 급여 외에 국가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임. 그 외 정규교사 부재시 채용되는 단기대체교사에 대해 일일 5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 교육활동 지원비는 유치원이라는 기관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질 좋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 면에서 지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본 연구 조사의 결과는 교육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교재교구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평가, 독서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등 유치원간 교류를 위한 지원 등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줌. 특히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재교구비 및 협력네트워크 지원에도 1백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또한 유치원에 기관 단위로 지원되는 비용임.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연간 14백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운영비'가 있고, 사립유치원에도 2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운영 지원비의 많은 항목은 대부분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환경개선비나 통학차량비 지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등 일부 사립을 포함한 공립유치원 예산 지원이 있음. 사립에 대해서는 특징적으로 4개 시·도에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분류하면 크게 3개의 영역으로 지원 방향을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 인건비, 시설지원 및 기능 보강으로 분류하였음.

○ 보육료 지원은 유치원 유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용이 아동에게 지원되는 항목으로서, 보육 아동 중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와 만 0~2세 영아에게 지원되는 영아보육료, 그리고 기타 시간연장이나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 소수지만 보육이용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방과후 비용 지원 등이 있음.

○ 인건비 지원은 교사 일인당으로 산정되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교사와 영아전담 시설에 지원되는 일반 인건비 지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그 외에 교사 개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민간(이하 가정 등 포함)과 국공립(이하 법인 포함)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지원되는 30만원의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나 많은 시·도에서 10만원 가량의 일정 금액을 영아 담당 교사에게 지원하는 처우

개선비, 또한 12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 등이 있음. 그 외 5개 시·도에서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3-5만원 가량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 시설 근무 보육교사의 경우 유아교사이면 기본적으로 42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영아교사는 22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 시설에 지원되는 시설 및 기능보강 분야 국가 지원은 매우 다양함.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비(개보수비)를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함.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지원도 다양한데,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875만원까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일부 인건비나 환경개선비를 지원함. 대부분의 민간 시설에 대해 각 지자체는 50-120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함. 작년부터 지원되는 아동당 7만원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운영비가 보육의 질적 측면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 외 지자체에 따라 아동의 안전 관리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도 함.

Ⅳ.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간 비교 및 제언

□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지원의 특징에 따라 비교해 보고자 함. 특히 지원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한 재정 지원의 비교를 실시함.

□ 마지막으로, 비교 결과에 의거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의 균형이라는 시각에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 지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고자 함.

1. 재정 지원의 특징 비교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의 영역을 비교할 때, 유치원 지원에서의 교육활동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지원을 어린이집 지원에서는 시설지원 및 기능 보강 지원으로 합친 것을 볼 수 있음.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은 보육은 '기능' 지원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어린이집이 행정적으로 또는 보육시설로서 '기능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유치원은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유치원의 기능 중 행정이나 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운영지원에 두고 아동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것을 별도 항목으로 두어 특히 뚜렷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비용 중 보육활동의 질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와 민간시설에 대한 최대 120만원의 교재교구비 지원,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지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음(주: 대다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만을 거론함).

  ○ 유치원의 경우는 시설 운영지원이 공립을 대상으로 한 비중이 큰 데 비해

교육활동지원은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 그 내용으로서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에 여유를 두게 하고 있고, 최대 8백만원이 되는 교재교구비,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장학 및 지역협력 지원 등 보다 다양한 명목과 큰 비용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함.

□ 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간 인건비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100% 인건비가 국고 지원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 30~80%가 중앙 및 지방정부 재원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두 기관간 인건비 조성 방법에 차이가 있음.

○ 인건비가 전액 국가 지원되는 경우 기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아동별로 지원되는 교육비나 보육료 등은 온전히 운영비, 교육·보육 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함. 공립유치원의 경우 아동별 교육비는 사립에 비해 매우 낮은 6만원에 불과함. 즉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아동별 보육료를 낮추고 인건비 전액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보육의 질적 수준에 더 많은 재정 투자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임.

□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수당은 유치원보다 낮으면서 국공립과 민간 간 수당 차이가 없다는 점이 특징적임.

○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은 46만원 내지 5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사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급여가 2,046천원(김은설 외, 2012)이라고 보면 250만원 내지 255만원의 월 급여를 추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 교사(유아교사 기준)는 42만원을 기준 수당으로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지원되는 교사 수당보다 4만원 내지 9만원 가량 낮은 수준을 보임.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은 국공립과 민간 시설 간 차이는 없음. 왜냐하면 이러한 수당의 재원은 누리과정 비용으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아동 당 7만원에 있기 때문임. 아동 당 지원은 시설유형과 무관하게 지원됨.

– 누리과정 비용 지원에 속하는 아동 당 7만원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부모바우처 방식에 속하는 방과후 과정 지원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그러나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아동에게 지원되는 7만원은 방과후 교사 인건비, 특성화교육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교사 수당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지원의 원래 의도에서 두 기관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급·간식비 지원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종일 12시간 보육활동에 대한 모든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급·간식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당 무상 보육료로써 활용이 가능함.

○ 유치원의 경우 지원되는 교육비(학비)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익자부담으로 비용이 충당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학부모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전국 일부 시·도는 농어촌, 또는 저소득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 때 지원비용은 주로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루어짐.

□ 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한 지원에서 차이를 볼 수 있음. 유치원의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설립유형과 무관하게 거의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보조인력 지원은 전국 3~4개 시·도에 한해 비용 차이를 두고 주로 정부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치원에 대한 지원 중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으로서 '3세대 하모니 인력'이 있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40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공·사립을 막론하고 기관에 지원하고 있음.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역에 따라 지원 비용이 약간의 차이를 보임 (본 보고서 p. 34 표 Ⅲ-1-9 참조).

- 3세대 하모니는 중·노령 인력의 활용이라는 면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일종의 자원봉사로 분류되어 오후 방과후 시간에만 간단한 지원 인력으로서의 활동을 함. 개인에 대해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620억원의 연간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 유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보조 인력으로 '세대간 지혜나눔' 지원 인력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은퇴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전문적 지도를 꾀하는 정책적 제도임. 전국 8개 시·도에서 17억 정도의 예

산이 투입되고 있음.

○ 유치원의 3세대 하모니나 세대간 지혜나눔 지원 인력이 전국적 차원의 정책인데 비해 어린이집의 보조 인력 지원은 지역의 사정에 의존하는, 매우 지역적 특성의 모습을 띄고 있음.

○ 어린이집의 보조인력으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의 보육도우미 지원, 대전, 울산의 보조교사 지원, 울산, 충북, 전남의 운전원 지원 등의 제도를 들 수 있음.

– 보육도우미는 1인당 25천원 내지 45천원까지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도시의 보조교사는 인당 일일 25천원~80천원, 월 500천원을 지원함. 그 외 운전원에 대해 월 645천원~1,500천원까지 지원함. 이 중 보육도우미는 정부지원시설이나 영아전담시설에 지원되는 보조인력임. 다음의 표는 앞서 제시된 것을 재정리한 것으로 두 기관간 보조인력에 대한 비교가 가능함.

〈표 Ⅳ-1-1〉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의 유치원/어린이집 간 비교

단위: 천원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도우미	서울	80~1,050/월	23,169,510	3세대 하모니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전국 17개 시·도 1인당 월 40만원 내외 지원
	부산	25/일	300,000		
	광주	1,520/월	300,000		
	대전	45/일	190,126		
보조교사	대전	500	600,000	세대간 지혜 나눔 인력	전국 9개 시·도 1기관당 24만원 (최빈치) 지원
	울산	80	360,000		
운전원	울산	1,500	144,000		
	충북	1,000	118,000		
	전남	645	30,990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비용 지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서는 유사한 지원 영역을 찾기 힘든 부분으로, 다양한 방과후 지원으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됨. 종일 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방과후 과정 개념이 없으며 기본 일과 종료 시점인 19시 이후의 시간연장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한 지원은 주로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나 지원 항목에 따라 일부 사립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본 보고서 p. 34-37 방과후 과정 지원 현황 표 참조). 지원 항목은 방과후 과정 운영비(공사립 모두),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주로 공립),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과 방학중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과 조간·야간 돌봄교실이 추가로 운영되며 이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있음.

– 전국적으로 이러한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100,717,071천원에 이름.

– 방과후 과정 이용 비용에 대해서 유치원은 아동당 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원액 또한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로 이용됨. 이 부분 예산이 전국 총계 261,381,806천원이므로, 결국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362,098,877천원으로 집계됨.

○ 어린이집은 종일 보육으로, 방과후 과정 개념이 없으나, 일부 시설에서 운영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 80%(국공립, 법인) 또는 월 120만원(민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총계 63,432,941천원으로 집계됨.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은 연령별로 162천원~222천원임.

2. 유치원·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교

□ 영유아기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동일한 수준의 부모지원 체계가 마련됨.

○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011년 월 17만 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으로 늘어났음. 향후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여 국고와 지방비의 부담을 완화,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3a:267).

□ 누리과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지원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모지원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운영 시간의 차이로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방과후과정비에 해당하는 비용(유아 1인당 7만원)이 학부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에 지급됨. 즉,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 해당 아동에 한해 월 7만원이 추가로 지원됨.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22만원이 12시간 종일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되어 별도의 종일반비 지원은 없음. 부모 지원의 차이로 볼 수 있음

– 유치원은 비용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계로, 부모로부터 추가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비용상한제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추가비용 수납이 제한적인 점 등 지원내역과 비용수납의 구조적 차이를 가짐.

○ 교사지원의 경우,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담당 교사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함.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짐.

–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자체별로 확보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유아 1인당 7만원으로 산정된 전체 예산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산정되어 있는 7만원의 예산에서 지출됨[5].

–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 별도로 지급되는 교사인건비 지원은 없음. 그러나 유아교육선진화사업 및 5개년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립교원 처우 개선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월 51만원의 수당이 지급됨으로써 사립유치원교사의 임금 제고에 유의한 효과를 가짐.

○ 시설운영지원의 경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유아 1인당 7만원으로 산정된 전체예산에서 누리과정 교사수당을 제한 금액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함. 이는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약 4만 3천원~ 4만 5천원 수준임.

---

5) 아동 1인당 22만원은 보육료지원으로 국비+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하며, 아동 1인당 7만원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은 교사 처우개선과 시설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함(보건복지부, 2013a:270). 교육부는 이 7만원이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방과후 교육비 7만원 지원에 대가 되는 것으로, 비용 지원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보고 있음.

〈표 Ⅳ-2-1〉 2013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 지원 비교

내용/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비고
부모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사립 월 22만원(국·공립 월 6만원) <방과후과정비>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사립 7만원 (국공립 월 5만원) (※방과후과정 대상 아동에 국한)	<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월 22만원	-유치원은 추가수납 가능 -어린이집은 추가수납불가
교사지원	<기존 교사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담임 교사당 대부분 51만원 (국·공립 교사는 국가에서 월 급을 지급하므로 별도 인건비 지원 없음)	<신규 교사수당 지원> 누리과정 교사당 30만원 수당 지급	*어린이집 -시·도 지자체 별로 누리과정 아동 1명당 월 7만원의 전체 예산에서 우선 지급함
시설운영지원	없음	<신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약 4만3천~5천원 (※시·도별 아동1인당 7만원의 총 예산에서, 교사수당 지급을 제한 금액을 누리과정아동수로 나누어 기관 운영비로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반 이상인 경우, 누리과정 보조교사 의무 채용(인건비 70만원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2013a).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p. 271
권미경 외(2013년 12월 발간예정).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

-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의 필요비용 지원은 보조교사 인건비,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기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급간식비,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의 5개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지도 관리함[6]. 보조교사 인건비 우선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3a:271; 표 II-3-1 참조).
-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으로 인해 별도로 지급되는 시설운영 지원 예산은 없음. 그러나 부모 대상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이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예산

6) 현장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대상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은 교재교구구입비(62.1%), 보조교사인건비(19.9%), 시설설비개선비(13.4%), 교사 외 인건비(3.8%), 급간식수준 개선비(0.8%) 순으로 나타남(김은설·유해미·엄지원, 2012).

구성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그러나 교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일한 누리과정 보육교사가 유치원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근로시간에 적은 임금을 받는 차이를 드러냄. 이는 누리과정 서비스 질의 형평성 담보에 문제가 된다고 보여짐.

○ 기관 지원의 측면에서도, 유아 1인당 7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금액의 일정부분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지출됨에 따라 학부모 부담비용 완화로 지출되는 유치원에 비해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기관 지원은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큼. 그러나 수납비용의 자율화 되어있는 유치원의 운용상의 편이점을 고려할 때, 유아 1인당 4만 3천원~5천원의 어린이집 지원으로 인해 누리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데에는 부족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하겠음.

○ 부모 지원의 측면에서도, 유치원의 경우 오후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 부모에게 7만원에 해당하는 비용부담이 덜어지는 결과를 낳으므로 어린이집 종일이용 부모에 비해 국가 수준의 지원에도 차이가 있다 하겠음.

3. 지원의 형평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어린이집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즉, 보육료 지원의 방식으로 시설 운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주: 실제로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될 것임) 지원의 구체적 항목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최근 들어 누리과정 도입과 더불어 보육활동이나 교사에 대한 지원이 높아지고 기본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재정지원의 내용을 유치원의 그것과 비교하면, 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재교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운영 등 여전히 유치원은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 영아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으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협력 활성화, 보육활동 프로그램 활용 지원, 도서 지원 등 구체적 목적을 둔 재정 지원 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또 하나 상대적 비교하위에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지원 인력 확충 방안으로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음. 이는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교통비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이 인력이 유치원에서 차지하는 지원의 중요성은 무게가 있음.

○ 동일한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청소나 간단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간제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모든 시·도에서 추진되는 것은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누리과정)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100%로 확대함으로써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고 시설로 하여금 인건비 확보에 대한 노력보다는 보육의 질과 내용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유치원과 비교할 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의 큰 차이는 인건비 지원 방식임. 공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인건비를 전면 지원하는데 비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위탁 운영체 소속 직원으로서 급여 30~80%만 지원을 받고 있음. 나머지는 아동 수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음. 즉, 아동 수의 변동은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제임.

○ 공립유치원에서 유아에 대해 6만원을 교육비로 지원하는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도 인건비 전액 지원이 실현된다면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공립유치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임.

– 그러나 42,000명이 넘는 국공립 및 법인 교직원의 인건비를 모두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클 수 있으므로,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유아 대상 보육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3~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수당의 지원 수준이 유치원과 동일하게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 최소한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의 누리과정 담당 유아교사에 대해서는 그러함.

○ 유치원과 동일한 공통과정을 바탕으로 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일 학력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기본 인건비는 보장이 되어야 하나, 민간 시설의 운영에 대해 정부가 간여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수당 방식의 지원에서는 최소한 동일 수준이 되어야 함.

○ 조사결과를 보면 유치원 교사는 시·도에 따라 46천원 내지 51천원의 교직, 담임, 처우개선비 등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유아담당 보육교사는 보통 42천원 정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유아담당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은 평균 7만원 이상 증액되어야 유치원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수당의 지원 원천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는 아동 1인당 7만원의 보조금에 있다는 것은 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차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음. 즉, 누리과정 교사 수당을 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국고지원으로 전환하고 7만원 지원은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7만원 지원과 동일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점차 구조를 바꾸어갈 필요가 있음.

□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산정에서 '급·간식비' 포함 여부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유치원 교육비와 보육료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음에도 교육비는 급·간식비를 제외한 비용이고 보육료는 급·간식비를 포함한 비용임. 이에 대한 재고가 요구됨.

○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7개 시·도에서 지자체 전입금으로써 유치원의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의 균형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급·간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 급식을 추진하고,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이는 추후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도

어긋나지 않는 대안임.

- 이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질을 위한 시설운영비의 확보라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것임.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해보건대,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정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방과후 과정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과도하게 다양하고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 비율을 보면 전체 유아의 62%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누리과정 교육비로서 어린이집 유아 보육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3~5시간에 해당하는 오전의 (기본) 교육과정에만 해당하고 오후 방과후 과정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많은 수의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 과정 운영비, 강사 인건비,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원은 유치원이 기본 교육과정 시간에 적합한 운영이 되도록 전형화되어 있다가 정책적으로 방과후 과정을 모든 유치원에서 운영하게 됨으로써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특히 방과후 과정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지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전환을 위한 과도기에 전폭적 지원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이나 이제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자리를 잡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균형적 지원과 두 기관간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한다면 방과후 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을 조금씩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방과후 과정을 완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할 때 맞벌이가 아님에도 과도하게 늦은 시간까지 유치원에 자녀를 맡겨두고자 하는 문제 부모의 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방과후 과정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되, 맞벌이 여부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은 필요하다고 봄.

참 고 문 헌

강원도민일보 보도자료(2013. 6. 3.). 영월군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선정.

경기도교육청 면담자료(2013. 8. 30.).

교육부(2011~2013). 유아교육 예·결산 내부자료. 교육부.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외(2013 발간예정).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조혜주·이보라(2011).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유해미·엄지원(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황성온·정영혜(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경남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2013a).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3b).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5. 22.).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이혜민(2013 발간예정). 2013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2007~2012).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내부자료.

이준구(2011). 재정학(제 4판). 다산출판사.

최은영·김정숙(2013.발간예정). 2013 유아교육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황성온·황우상(2012). 공립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2012). 영유아보육 질적 성장에서의 보육교사의 역할과 처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2012 춘계한국보육지원학회 주제발표 자료집.

부 록

부록 1. 시·도별 유치원 교사 연수 예산

부록 2. 시·도별 어린이집 교사 보수교육 지원 현황

부록 3. 교육공무원 호봉별 기본급 표

부록 4. 시·도별 유치원 재정 지원 현황 조사표

부록 5. 시·도별 어린이집 재정 지원 현황 조사표

부록 1. 시·도별 유치원 교사 연수 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시·도	대상기관	기관당 비용	총예산
에듀케어 관련연수	서울	지역교육청	1,096	12,056
유치원교원연수	광주	공립 일부	300	2,400
		사립 일부	300	10,200
누리과정 연수	강원	공립, 사립	6,378	108,421
교원 자격연수	강원	공립, 사립	10,930	163,064
교원 직무연수	강원	공립, 사립	246	32,520
전문직 직무연수	강원	공립	598	2,990
교육과정심화연수	강원	공립, 사립	5,483	116,247
장학자료 보급	강원	공립, 사립	312	117,520
유치원 국외연수	전남	공립	57,000	57,000
자격연수(1정)	전남	공립, 사립	62,160	62,160
자격연수(원장, 원감)	전남	공립, 사립	60,560	60,560
누리과정연수	전남	공립, 사립	5,532	27,660
교원 연찬회 운영	전남	공립, 사립	1,228	28,230
공사립유치원 연수 지원	경북	공,사립	4,125	16,500
유치원교원 국외연수	경북	공,사립일부	2,500	60,000
교원연수 자율경비 지원	제주	공립	126	200
		사립	116	200

부록 2. 시·도별 어린이집 교사 보수교육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시·도	1인당 지원액	대상 수	총 예산
세종	직무교육: 60 승급교육: 120	150	15,000
충남		2,245	97,624
경북		1,540	106,790

부록 3. 교육공무원 호봉별 기본급 표

구 분	월 기본급 (원)	구 분	월 기본급 (원)
3호봉	1,373,700	27호봉	3,015,300
4호봉	1,413,300	28호봉	3,110,000
5호봉	1,453,300	29호봉	3,208,700
6호봉	1,493,200	30호봉	3,308,000
7호봉	1,532,400	31호봉	3,406,800
8호봉	1,571,900	32호봉	3,505,400
9호봉	1,611,900	33호봉	3,605,700
10호봉	1,655,300	34호봉	3,705,600
11호봉	1,698,100	35호봉	3,805,800
12호봉	1,741,700	36호봉	3,905,400
13호봉	1,821,200	37호봉	3,992,300
14호봉	1,900,800	38호봉	4,079,200
15호봉	1,980,300	39호봉	4,166,200
16호봉	2,059,900	40호봉	4,252,700
17호봉	2,138,800	근가1	4,341,800
18호봉	2,221,300	근가2	4,397,800
19호봉	2,303,500	근가3	4,453,800
20호봉	2,385,400	근가4	4,509,800
21호봉	2,467,300	근가5	4,565,800
22호봉	2,558,400	근가6	4,621,800
23호봉	2,648,900	근가7	4,677,900
24호봉	2,739,400	근가8	4,733,900
25호봉	2,829,900	근가9	4,789,900
26호봉	2,920,700	근가10	4,845,900

부록 4. 시·도별 유치원 재정 지원 현황 조사표

시 · 도별 유치원 재정 지원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2013년 연구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비교·분석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시·도청과 시·도 교육청 재정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귀 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포함)에서 각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 주어진 양식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조사표는 재정 지원 업무를 맡고 계신 분 중 업무 범위가 넓고 해당 업무 경력이 높은 분이 책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작성자분께는 차후 소정의 사례를 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조사표는 아래의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8월 16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업무 담당자께서 관련 사항을 직접 작성해 주시고, 만일 관할 시군구청의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다면 수합하여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수신처 및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10층
육아정책연구소 조아라 연구원
이메일: choara@kicce.re.kr
전화 02-398-7768 FAX 02-730-3319

※ 응답자 일반 사항

소속기관	_____ 시·도 교육청	**직급/직위**	
담당 업무		**현 업무 담당경력**	_____년 _____개월
연 락 처	직장: – – 휴대폰: – – 이메일:		

※ 귀 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포함)에서 각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에 기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중앙정부 정책 사업의 일부 사례에 대해 추측하여 예시한 것이오니 사실과 맞지 않을 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항을 기입하시고 제시된 칸이 부족한 경우, 여백을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Ⅰ. 학비 지원(급식 포함)

단위: 천원, 기준: 2013.7 현재

지원 명목	대상 기관	대상(지원방법)	단위	단위 비용	대상 아동수	교육청 총 예산	지원 시기	재원(교부금, 교육청자체예산, 지자체 산입금)
1. 누리과정 학비	공립	3~5세 유아(부모바우처)	유아 1명	60			매월	교육재정교부금
	사립	3~5세 유아(부모바우처)	유아 1명	220				교육재정교부금
2. 종일반비 지원 (방과후)	공립		유아 1명	50				교육재정교부금
	사립		유아 1명	70				교육재정교부금
3. 농어업인 유아 학비								
4. 다문화가정교육비지원								
5. 저소득층유아 급식비지원								
6.								
7.								

2.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립교원만 해당) ※공립교원 인건비는 제외함.

단위: 천원, 기준: 2013.7 현재

지원 명목	대상 기관	지원 대상(방식)	단위	단위 비용	총 대상 수	교육청 총 예산	지원 시기	재원(교부금, 교육청자체예산, 지자체 산입금)
1. 담임수당	모든 사립	학반 담임(개인계좌)	교사 1명	110			매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처우개선비	사립							
3. 단기대체교사지원	사립							
4.								
5.								

3. 교육활동 지원

단위: 천원, 기준: 2013.7 현재

지원 명목	대상 기관	지원 대상(방식)	단위	단위 비용	교육청 총 예산	지원 시기	재원(교부금, 교육청자체예산, 지자체 산입금)
1. 교재교구비	사립 일부						(예시: 군청 유아교육 지원 사업비)
2.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1개 네트워크(거점 유치원 기관 계좌)					
3. 3세대하모니							
4. 세대간 지혜나눔							
5.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6.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							

4.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단위: 천원, 기준: 2013.7 현재

지원 항목	대상 기관	지원 대상(방식)	단위	단위 비용	총 대상 수	교육청 총 예산	지원 시기	재원(교부금, 교육청자체예산, 지자체 산입금)
1. 학교운영비지원	모든 공립	유치원(기관 계좌?)	1 개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환경개선비	공립단설	유치원	1 개원					
3. 에듀케어운영(서울시)	해당 사립(서울시)							
4.								

부록 5. 시·도별 어린이집 재정 지원 현황 조사표

시·도별 어린이집 재정 지원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2013년 연구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비교·분석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시·도청과 시·도 교육청 재정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귀 시 · 도(시 · 군 · 구 포함)에서 각 어린이집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 주어진 양식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조사표는 재정 지원 업무를 맡고 계신 분 중 업무 범위가 넓고 해당 업무 경력이 높은 분이 책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작성자분께는 차후 소정의 사례를 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조사표는 아래의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8월 16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업무 담당자께서 관련 사항을 직접 작성해 주시고, 만일 관할 시군구청의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다면 수합하여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수신처 및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10층
육아정책연구소 조아라 연구원
이메일: choara@kicce.re.kr
전화 02-398-7768 FAX 02-730-3319

※ 응답자 정보

소속기관	_____ 시·도청	**직급/직위**	
담당 업무		**현 업무 담당경력**	_____년 _____개월
연 락 처	직장: - -	핸드폰: - -	email:

※ 귀 시·도청(시·군·구 포함)에서 각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 내역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에 기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국고사업 항목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귀 시·도 및 시군구의 특색사업 등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칸이 부족한 경우, 칸을 더 만들어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Ⅰ. 보육료지원 (2013. 7월 기준)

단위:천원

지원 항목	대상 시설유형	수령자(지원방법)	단위	단위 비용	대상 아동수	지원 시기 (/횟수)	재원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및 부담 비율)	시·도청 (시군구포함) 연간 총 예산
1. 누리과정	모든 시설	3-5세 영유아(부모바우처)	유아 1명	220	명	매월	□국고: % □시/도: % □시/군/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 영아무상보육	모든 시설	0-2세 영유아(부모바우처)	영아 1명				□국고: % □시/도: % □시/군/구: %	
3. 시간연장							□국고: % □시/도: % □시/군/구: %	
4. 장애아무상							□국고: % □시/도: % □시/군/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5. 기타							□국고: % □시/도: % □시/군/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 종사자인건비 지원 (2013. 7월 기준)

단위: 천원

지원 항목	대상 시설 유형	수령자 (수령방법)	단위	단위 비용	대상 교사수	지원 시기	재원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및 부담 비율)	시 · 도청 (시군구포함) 연간 총 예산
1. 교사 인건비	국공립/법인				명		□국고: % □시도: % □시군구: %	
2. 영아전담							□국고: % □시도: % □시군구: %	
3. 시간연장교사							□국고: % □시도: % □시군구: %	
4. 장애아 교사							□국고: % □시도: % □시군구: %	
5. 대체교사							□국고: % □시도: % □시군구: %	
6.누리과정교사수당	모든 시설	누리과정교사 (개인계좌)	교사 1명	30		(매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7. 처우개선비							□국고: % □시/도: % □시/군/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8.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국고: % □시도: % □시군구: %	
9.								
10.								
11.								
12.								
13.								
14.								

3.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시설 지원 (2013. 7월 기준)

단위: 천원

지원 명목	대상 시설 유형	대상	단위	단위 비용	대상 수	지원 시기 /횟수	재원	총 예산
1. 누리과정운영지원비	모든 시설	3-5세 영유아(기관계좌)	유아 1인당				□국고: % □시/도: % □시/군/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 교재교구비							□국고: % □시도: % □시군구: %	
3. 차량운영비							□국고: % □시도: % □시군구: %	
4.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국고: % □시도: % □시군구: %	
5.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지원							□국고: % □시도: % □시군구: %	
6. 환경개선비							□국고: % □시도: % □시군구: %	

7.장애아보육환경개선							□국고: % □시도: % □시군구: %	
8.기자재구입비							□국고: % □시도: % □시군구: %	
9.							□국고: % □시도: % □시군구: %	
10.							□국고: % □시도: % □시군구: %	

4. 기타 지원 (2013. 7월 기준)

단위: 천원

지원 명목	대상 시설 유형	대상	단위	단위 비용	대상 수	지원 시기 /횟수	재원	총 예산
1.							□국고: % □시도: % □시군구: %	

연구보고 2013-07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지원 비교 분석 연구

발행일 2013년 9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72-5 93370